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및 정책시사점

2010. 12

송헌재 · 성명재 · 고 선

 한국조세연구원

서 언

우리나라는 2008년에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정책을 시행하였다. 정책입안 단계에서는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회복이 직접적인 정책 목표가 아니었으나 정책이 집행된 시기가 미국 발 경제위기가 한창 진행중인 시점이어서 이러한 정책이 경기 활성화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였을 것으로 짐작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9년과 2010년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경제위기에 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정책 시행 이후 성과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차후에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을 때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본 보고서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구축한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2008년 실시된 유가환급금 정책과 종합부동산세 환급 정책이 가구의 소비 활성화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이 보고서를 계기로 앞으로는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연구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송헌재, 성명재, 고선 박사가 집필하였다. 저자들은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 이철인 교수와 김대원 박사, 그리고 익명의 논평자 및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연구의 자료 수집에 도움을 준 류인경 전문연구원, 김현숙, 이준성 연구원과 원고정리 및 교정을 맡아준 변경숙 주임 연구행정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2010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요약 및 정책시사점

정부는 2008년에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정책을 실시하였다. 비록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정책은 직접적으로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으나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파생된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조세 환급 정책이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연구기회를 제공해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8년에 단행되었던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은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의 정책적 유효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환급정책이 제공해 준 실험적 상황을 분석하여 앞으로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연구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석은 향후에 유사한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비 진작 정책의 효과를 미리 검증하여 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 주요국에서는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이 여러 차례 시행되었다. 예를 들면, 일본은 1999년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한 바 있고, 미국에서는 2001년과 2008년에 경기부양을 목표로 한 조세 환급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효과성 평가(Program Evaluation)를 위해 이미 다양한 해외 선행 연구들이 있으며 연구 자료와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정부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선행적 비판 및 우려의 목소리는 높았으

나 정책 시행 이후 성과평가를 위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엄밀한 계량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정부 정책의 성과평가를 최초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비 진작 효과를 이중차분방법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종합부동산세 환급의 경우에는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설명변수를 적절히 통제한 경우에는 경제적·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유가환급금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조를 이루었다.

환급금의 주된 수혜대상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고소득층이고 유가환급금의 경우에는 주로 중소득층과 저소득층이 해당된다. 한계소비성향 체감의 법칙은 재정패널자료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었다. 고소득층은 소비성향이 낮고 예산제약의 강도가 낮다. 따라서 환급에 따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유발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반면에 유가환급금의 경우에는 소비성향이 평균적으로 더 높고 예산제약의 강도가 높은 중·저소득층이 주된 수혜계층인 만큼 환급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소비지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 이는 경제이론에서 제시하는 바와 일치한다.

경기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목적의 정책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개별(특별)소비세의 한시적 세율인하 또는 법인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등 한시적 정책수단이 많이 사용되곤 하였다. 소위 바겐세일 효과를 노린 정책이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두 가지 환급정책은 가격에 영향을 주는 바겐세일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소득을 매개체로 사용한 만큼 바겐세일 효과를 도모하는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에 적절하지 않다. 다만 가처분소득의 변화를 정책도구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예산제약의 강도 또는 소비성향 등에 따라 효과성이 극명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가환급금 정책과 종합부동산세 환급정책의 정책목표가 동일하

지 않으며,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소비 진작이나 특정 계층의 부담 경감을 정책목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 측면에서 정책효과를 측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소득의 변화는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므로 표면적인 정책목표와 달리 실제적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소비 진작이 요구된다면 상대적으로 예산제약의 강도가 높은 계층에 수혜가 집중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동일한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미시적 귀착의 차이로 인해 거시정책효과에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의 미시적 효과분석이 선행되어야만 거시경제적 성과도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득과 관련된 조세정책과 연계하여 소비 진작 효과를 논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조 또는 지원정책의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종합소득세의 경우 면세자 비율이 상당히 높고, 과세자 가운데에서도 상당수가 세부담의 절대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소득세를 경감해주더라도 소비 진작 효과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효과성 측면에서 비용낭비적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근로장려세제 등과 같이 한계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집중된 수혜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소득지원정책이 야기하는 근로의욕 저해효과로 인해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비 진작 정책으로서의 유효성·효과성은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론	15
II. 해외사례 및 선행연구	20
1. 주요국 해외사례	20
가. 미국	20
나. 일본	30
다. 기타 국가의 소비 진작 정책	35
2. 선행연구 검토	36
가. 미국 조세 환급 정책에 대한 연구	36
나. 일본의 상품권 지급정책에 관한 연구	41
III. 유가환급금·종합부동산세 환급 제도 및 현황	45
1. 유가환급금제도	45
2. 종합부동산세 환급	51
3. 재정패널자료에 나타난 유가환급금·종합부동산세환급 현황	56
가. 재정패널 데이터 개요	56
나. 유가환급금 분석에 사용된 자료	64
다. 종합부동산세환급 분석에 사용된 자료	68
4. 소득계층별 유가환급금·종합부동산세 환급금 분포 특성	73
가. 소득·소비지출·소득세 부담·환급금 분포	73
나. 소득재분배 효과	81
다. 가계조사자료와의 소득분포 비교	84

IV. 유가환급금제도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효과분석	86
1. 분석방법	88
가. 이중차분(Difference in Differences)기법	89
나. 추정식 및 추정에 사용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정의	94
2. 분석결과	96
가. 유가환급금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96
나.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107
V. 정책시사점 및 결론	118
참고문헌	123
부록 I. 내구재 소비 관련 모형	126
부록 II. 가계조사자료의 소득 분포	131

표 목 차

〈표 II- 1〉 미국 JCT의 2008년 조세 환급정책의 소득분배 효과 추정결과	24
〈표 II- 2〉 과거 미국의 세금 환급액의 용도별 사용 비중	27
〈표 II- 3〉 2008년 경기 진작법 시행에 따른 재정수지 변화	29
〈표 II- 4〉 일본의 소득세와 주민세 정률감세(1999~2006)	32
〈표 II- 5〉 일본의 지역진흥권과 정액급부금 비교	33
〈표 III- 1〉 소득금액에 따른 유가환급금	48
〈표 III- 2〉 수혜 대상별 유가환급금 지급 현황	49
〈표 III- 3〉 유가환급금 지급 현황	65
〈표 III- 4〉 환급금액 및 지급절차에 대한 만족도	66
〈표 III- 5〉 유가환급금의 주된 사용용도	66
〈표 III- 6〉 유가환급금의 주된 소비지출 항목	67
〈표 III- 7〉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지급 현황	70
〈표 III- 8〉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지급절차에 대한 만족도	71
〈표 III- 9〉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주된 사용용도	72
〈표 III-10〉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주된 소비지출 항목	73
〈표 III-11〉 소득계층별 소득·소비지출·종부세·유가환급금의 분포(2차 재정패널자료 5,037가구 기준)	77
〈표 III-12〉 10분위/1분위의 상대비(2차 재정패널자료 5,037가구 기준)	78
〈표 III-13〉 소득계층별 소득·소비지출·종부세·유가환급금의 비중 및 소득 대비 상대비중	

(2차 재정패널자료 5,037 가구 기준)	79
〈표 III-14〉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환급금 수혜가구의 비중 (2008년 재정패널자료 기준)	81
〈표 III-15〉 유가환급금 수혜가구의 비중(2008년 재정패널자료 기준)	81
〈표 III-16〉 소득변수와의 상관관계 추정치	82
〈표 III-17〉 각종 소득의 지니계수 추정치	84
〈표 IV-1〉 유가환급금 이중차분 추정식에 포함된 통제 변수 기초 통계	97
〈표 IV-2〉 월평균 소비지출 및 각 항목별 지출 통계: 유가환급금 ...	101
〈표 IV-3〉 유가환급금이 월평균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추정 결과	103
〈표 IV-4〉 유가환급금이 지출 항목별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추정 결과	105
〈표 IV-5〉 유가환급금 수령인원 수에 따른 가구 분포	106
〈표 IV-6〉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이중차분 추정식에 포함된 통제 변수 기초 통계	109
〈표 IV-7〉 월평균 소비지출 및 각 항목별 지출 통계: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112
〈표 IV-8〉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월평균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추정 결과	115
〈부표-1〉 소득계층별 소득·세부담 분포(2009년 가계조사자료 기준)	131

그림목차

[그림 II-1] 미국의 경기선행지수(1998~2008년)	26
[그림 II-2] 일본의 경기선행지수(1998~2008년)	34
[그림 III-1] 유류세 인하 전후 휘발유값 추이	46
[그림 III-2] 2차년도 조사표의 내용	62
[그림 III-3] 소득계층별 종합부동산세 환급금과 유가환급금의 비중 (2차 재정패널자료 5,037가구 기준)	79
[그림 III-4] 소득계층별 종합부동산세 환급금과 유가환급금의 소득 대비 비율(2차 재정패널자료 5,037가구 기준)	80
[그림 IV-1] 이중차분 기법을 적용한 Treatment effect	93

I. 서론

2008년 경제 위기를 맞아 정부는 유례 없는 유가환급금 정책을 실시하여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1,435만명에게 2개월간(11~12월) 2조 6,520억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국세청은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환급 신청을 받아 같은 해 12월 15일 5,622억원을 납세자들에게 환급하였다.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정책은 정부의 무조건부 현금보조 정책으로 소비 진작 및 과도한 세부담의 환급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최근의 조세 환급정책, 즉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정책이 이루어진 직접적인 배경은 서로 달랐다. 유가환급금 정책은 유가 급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실시되었다. 종합부동산세 환급정책은 불합리한 조세부담의 환급을 통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데에 초점이 있었다. 하지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두 정책은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부터 파급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다수의 대상에게 일시적으로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켰다는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 주요국에서는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이 여러 차례 시행되었다. 예를 들면, 일본은 1999년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한 바 있고, 미국에서는 2001년과 2008년에 경기부양을 목표로 한 조세 환급 정책이 실시되었다. 비록 우리나라의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정책은 직접적으로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한 정책은 아니었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조세 환급 정책이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한 연구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조세 환급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밀한 실증 분석은 앞으로 또 다른 경제위기가 다가왔을 때 적극적인 소비 진작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판단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의 정책적 유효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두 환급정책이 제공해 준 실험적 상황을 분석하여 앞으로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연구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석은 향후에 유사한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비 진작 정책의 정책효과를 미리 검증해본다는 점에서도 정책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본 연구에서는 환급 대상·형태 등의 차이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차이점을 가져오는지 환급금 처분을 통해 만들어내는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시사점을 찾을 것이다.

유가환급금은 저소득층이 주된 환급대상인 반면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경우에는 고자산가 중 일부가 주된 환급대상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중·저소득층이 주된 정책대상이다. 유가환급금은 환급대상을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중·저소득층이 주된 환급대상이다. 이들은 높은 소비성향 또는 부채로 인한 유동성 제약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다.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일회성으로 지급된 정책이므로 일시적 세금 감면이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 포인트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자들이 기본적으로 (자산 6억원 이상의) 고자산층이므로 환급대상자 역시 이들 중 일부인 고자산계층이다. 상관관계가 높지는 않지만 소득과 자산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 환급의 경우에는 중·고소득층이 주된 정책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환급은 고소득층이 주

된 수혜대상이고, 또한 영구적인 세금감면의 성격을 지니는 만큼 그 효과가 고소득층의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두 가지 환급정책은 고소득·고자산계층 또는 저소득·저자산 계층과 같이 주요 대상이 다르므로 환급금 처분 특성상 계층간 행태변화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비슷한 시기에 각기 상이한 계층을 대상으로 조세 환급이 나타났으므로 경기변동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일정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소득계층별로 각각의 환급정책이 소비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지 비교하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 측면에서의 정책 유효성을 검토해본다. 성격이 극단적으로 상이한 두 가지 환급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도구로 환급정책을 사용할 때 어떤 방안이 보다 효과적인지 정책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판단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부연하자면 상기의 두 가지 정책이 직접적으로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진작 효과에 얼마나 유효하였는지를 검증하기보다는, 결론론적으로 해석해볼 때, 환급 또는 소득의 무상이전(유가환급금)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를 가늠해본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본래의 정책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환급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해볼 수 있는 실험적 사건으로서 향후에 소비 진작 등을 목적으로 유사한 정책을 전개하고자 할 때 그 효과를 미리 예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향후의 정책시사점을 찾았다면, 소득세 감세 시 공제 확대·세율 인하 또는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 중 어떤 정책수단의 효과성이 클 것인지 등에 대한 증거 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할인 등 가격정책을 통한 효과는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환급대상자 표본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표본으로 인한 추정편의가 다소 우려된다.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일반적인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환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미리 예상해보면, 예산제약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고소득층에서는 소비 진작 효과가 별로 없거나 작을 것인 반면, 예산제약이 상대적으로 팽팽한 저소득층에서는 소비지출 증가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계의 부채가 많으므로 부채상환 효과가 컸고, 일본은 쿠폰 지급시 소비 진작 효과가 작았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효과를 나타내었는지의 여부를 주요 외국 사례와 비교해보는 것 또한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유가환급금과 종합부동산세 환급은 정책대상의 차이와 더불어 제도적 특성에 따른 정책효과의 차이도 발견할 수 있다. 유가환급금은 일회성 환급정책으로 항상소득 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일시소득 형태의 windfall gain이 소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반면에 종합부동산세 환급은 일종의 항구적 세금감면의 특성을 지니는 만큼 항상소득의 변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유가환급금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다. 두 환급금 사이에 공통분모가 없어 일시적·항구적 개편의 차이 효과에 대한 분석은 곤란하다. 즉, 항상소득의 변화와 일시소득의 변화효과 차이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 다시 말해 소득효과와 일시성·항구성의 차이에 의한 효과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상기의 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성 측면에서 항구적 감면과 일시적 감면의 효과를 구분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환급대상(또는 소득지원 정책대상)의 소득 특성에 따른 정책의 유효성에 기초한 적정 정책수단의 선택과 기대효과에 대한 추정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세금 환급정책, 또는 쿠폰 지급 등을 통한 소비 진작 또는 경기 진작 정책의 효과성을 주요 선진국 사례를 들어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2008년에 시행되었던 유가환급금제도의 구조와 종합부동산세의 환급 내용 등을 포함한 두 가지 환급의 현황을 살펴본다. 아울러 통계적 분포 특성, 소득재분배 효

과 등을 재정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살펴본다. 제IV장에서는 두 가지 환급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과 이를 통해 도출한 분석결과를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는 두 가지 환급정책이 지니는 경제적·통계적 특성과, 환급정책의 목적에 비추어 살펴본 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유의성·유효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시사점을 정리한다.

II. 해외사례 및 선행연구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유가환급금이나 종합부동산세 환급과 유사한 정책의 사례를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해외의 조세 환급 정책들은 주로 경기 부양을 위해 활용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2001년과 2008년에 소득세 환급이 실시되었다. 일본에서는 1999년에 소비 진작을 위한 상품권을 대량으로 지급한 바 있다. 이러한 소득세 환급 및 상품권 지급이 실제 가구의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해외에서 이루어진 유사한 정책의 사례를 살펴보고, 해외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 정책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으려고 한다. 우선 제1절에서는 다양한 정책 사례를 미국과 일본 및 기타 국가들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제2절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유사한 정책시행 효과를 분석한 해외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론 및 결과를 소개하고 본 연구를 위한 시사점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1. 주요국 해외사례

가. 미국

미국은 역사적으로 불경기가 도래하였을 때마다 다양한 형태로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정책을 펼쳐왔다. 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이 실시되기도 하였고, 일부 정책은 경기 진작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 2001년과 2008년에 실시한 조세 환급정책 역

시 경기 부양을 위하여 펼쳐진 재정정책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민간부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하에서는 2001년과 2008년 미국 조세 환급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각각 살펴본다.

미국의 2001년 세금 환급 조치는 “2001년 경제성장 및 조세경감 조정법(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 법은 2001년 5월 26일에 의회를 통과하였고, 2001년 6월 7일에 서명되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2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소득세율을 전면적으로 인하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하는 것이었다. 이 법안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총 1조 3,500억 달러의 감세조치가 시행되도록 계획되었다. 특히 소득세율은 2002년(2001년 소득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여, 최고세율의 경우 2006년까지 기존의 39.6%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연방소득세의 환급은 2001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환급 재원은 2001년 소득분이 적용되는 200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최저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금액으로 약 350억달러 규모였다. 새로 도입된 법안에 따르면 독신가구의 경우 소득금액 6천달러, 부부합산 가구의 경우 소득금액 1만 2천달러까지 적용되는 최저소득세율이 기존 15%에서 10%로 5%p 인하되었다. 2001년의 소득세 환급은 이미 납부한 2001년의 소득세 인하분에 대한 선지급의 성격이었다.

소득세 환급 대상은 2000년에 소득세를 신고한 실적이 있는 전체 납세자였다. 환급액은 소득수준을 별도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환급대상 해당자일 경우에는 독신자에게는 300달러, 부부합산 신고자에게는 600달러가 일시불 현금지급방식으로 일괄 환급되었다.

2001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이루어진 전체 세금 환급의 규모는 총 380억달러에 달하였다¹⁾. 이는 2001년 전체 GDP의 0.4% 수준이었고, 2001년 3/4분기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에는 전체 GDP의

1.5%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세금 환급 정책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기대가 이루어졌다. 도이치뱅크의 경우에는 전체 세금 환급액 중 1/4 정도가 즉시 소비지출로 전환될 경우 2001년 3/4분기의 경제성장률을 1.2%p 높이는 효과가 있고, 다음 분기에 다시 1/4이 소비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추가적으로 0.7%p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총세금 환급액 중 2/3가 소비로 연결될 경우에는 3/4분기에 최대 1%p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2001년 하반기 중 경제성장률이 1.3%p 높아지는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²⁾.

실제로 이러한 세금 환급 정책이 경기부양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일부 보고서는 해당 정책이 의도한 효과인 경기부양을 달성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지는 않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1년 세금 환급 정책은 소비보다는 저축을 보다 많이 높여서, 2001년 저축률이 1/4분기 1.2%에서 2/4분기 3.4%로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환급된 세금이 소비보다는 부채상환이나 저축에 보다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경기부양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³⁾.

한편 세금 환급 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연구보고서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프린스턴 대학교 David Johnson 등이 수행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세금 환급은 가계소비를 증가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⁴⁾. 세금 환급 정책이 소비지출에 미친

1) Johnson, Parker, and Souleles(2006).

2) 한국은행(2001).

3) 한국은행(2008).

4) 박형수(2008), p 7. 이 연구는 이후 Johnson, Parker, and Souleles(2006)로 발전되었는데, 구체적인 방법론 및 분석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소개하도록 한다.

영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시자료의 분석이 필요한데, 이러한 연구 성과 및 시사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008년에는 “2008년 경기부양법 (the Economic Stimulus Act of 2008)”을 통하여 세금 환급 정책이 다시 실시되었다. 이번에도 역시 주된 목적은 민간소비의 회복 및 경기부양을 도모하는 데에 있었다. 이 법안은 2008년 1월 29일 하원을 통과하였고, 상원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2008년 2월 7일 상원 및 하원에서 인준되었다. 이후 부시 대통령이 서명을 하며 2008년 2월 13일에 제정되었다.

2008년 세금 환급의 대상은 납세실적이 있거나 사회보장 연금 및 상해군인 연금을 포함하여 소득액이 3,000달러 이상인 납세자였다. 2008년 5월까지 500억달러, 6월 말까지 1,100억달러의 세금이 환급되도록 계획이 세워졌다. 세금 환급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제도 시행 첫주에만 770만가구였다. 전체 수혜자 규모에 대해서는 약 1억 3,000만가구가 수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기혼가구를 고려하면 수급대상자는 약 2억명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세금 환급 규모는 총 1,000억달러 수준이었다. 환급액은 소득 수준과 양육 자녀 수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독신가구의 경우에는 최소 300달러에서 600달러까지 납세액에 따라 차등 환급되었고, 기혼자 가구의 경우에는 최소 600달러에서 1,200달러까지 납세액에 따라 차등 환급되었다.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300달러가 추가로 환급되었다. 일정한 기준소득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5%를 환급에서 공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기준소득은 독신가구의 경우에는 7만 5,000달러, 기혼자 합산신고 가구의 경우에는 15만 달러였다. 이외에도 투자금액에 대한 세금감면, 주택저당공사의 모기지 매입 및 연방주택청(FHA) 주택보증 상한액 확대 등의 정책들도 동시에 시행되었다⁵⁾.

이와 같이 2008년 미국의 소득세 환급 정책은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급하였기 때문에 소득분배 효과를 일부 보이기도 하였다. 미국 의회 통합조세위원회(JCT: Joint Committee on Taxation)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표 II-1>에 나타난 것처럼 소득이 작을수록 유효세율의 하락폭이 커졌으나, 실제 수혜금액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조정총소득이 1만달러 이하인 계층에서는 정책 실행 이후로 평균 유효세율이 음(陰)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2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유효세율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과세단위별 수혜금액은 조정총소득이 커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나, 이러한 증가추세는 10만달러 초과 20만달러 이하 계층에서 가장 큰 과세단위별 수혜금액을 기록하며 멈추었다. 최상위권인 20만달러 이상 계층에서는 오히려 과세단위별 수혜금액이 500달러에 불과하였다.

<표 II-1> 미국 JCT의 2008년 조세 환급정책의 소득분배 효과 추정결과
(단위: %, 달러)

조정총소득	평균실효세율			과세단위별 수혜금액
	정책전	정책후	차이	
1만달러 미만	3.7	-0.6	-4.3	411.5
1~2만달러	3.7	1.0	-2.7	459.6
2~3만달러	9.2	7.0	-2.2	632.7
3~4만달러	12.1	10.2	-1.9	723.5
4~5만달러	14.3	12.7	-1.6	800.1
5~7.5만달러	16.3	14.9	-1.4	941.4
7.5~10만달러	18.4	17.2	-1.2	1,143.9
10~20만달러	22.4	21.7	-0.7	1,311.6
20만달러 초과	25.8	25.8	0.0	500.0
합계	19.6	18.6	-1.0	802.3

자료: 박형수(2008), p. 22.

5) 박형수(2008), p.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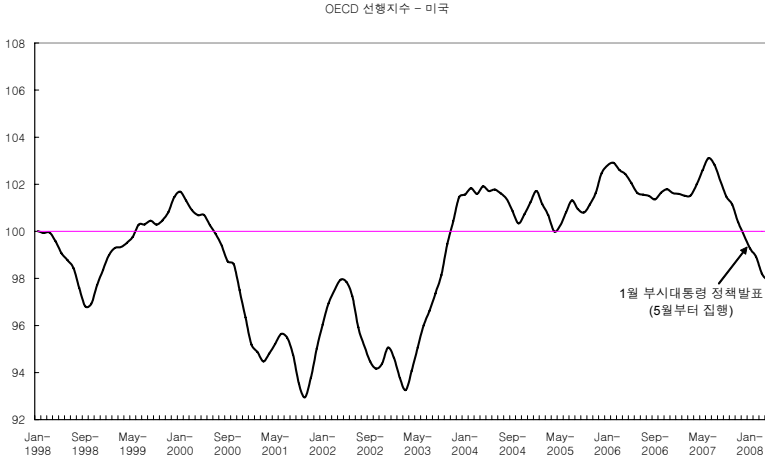
2008년 미국의 소득세 환급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우선 2001년의 소득세 환급과 마찬가지로 경기부양 및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견해가 일부 있었다. 상당한 규모의 세금 환급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국면에서 소비 진작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었다. 이러한 견해는 2008년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년래 최대폭이었다는 점에 바탕하고 있다. 또한 세금 환급의 효과는 소비 진작보다는 저축 증가와 부채상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대한 것보다 효과가 미약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한국은행의 검토결과에 따르면 세금 환급으로 인한 개인 가처분소득의 증가분인 500억달러 중 86%인 430억달러가 저축으로 흡수된 것으로 파악되었다⁶⁾.

CNN 머니의 분석 역시 긍정적이지 않았다. 2008년 4월 28일 CNN 머니는 세금 환급 규모가 너무 작고,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분석했으며, 세금 환급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경기 순환연구소(ECRI) 역시 세금 환급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더 이른 1월이나 2월에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2008년 세금 환급안은 시기적으로 늦었고 경기부양 효과가 미약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⁷⁾.

6) 내일신문 2008년 7월 24일자 보도.

7) 박형수(2008), p. 9.

[그림 II-1] 미국의 경기선행지수(1998~2008년)



자료: 박형수(2008), p 19

박형수(2008) 역시 정책의 적시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림 II-1]에 나온 것처럼 미국은 이미 2007년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금 환급이 이루어진 2008년 5월은 이미 경기 침체가 상당히 지속된 시기였고, 경기부양을 목표로 한 세금 환급 정책이 실시되기에는 결코 빠르지 못한 시점이었다. 이에 덧붙여 실제 세금 환급 작업은 수많은 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방대한 작업이기에, 각 가구에서 세금 환급금을 모두 수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⁸⁾.

물론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만으로 정책효과를 파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표 II-2>에 나타난 것처럼 미국의 과거 자료에 따르면 세금 환급액 중 20~25%가량만 소비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나머지 중 27~37%는 저축, 40~49%는 부채상환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즉, 세금 환급금에 대한 저축성향이 상

8) 박형수(2008), p 19.

당히 높기 때문에, 세금 환급 이후에는 가계부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1년 후에는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 환급 직후에는 부채상환에 사용되었던 금액이 이후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결국 소비에 충당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미국 세금 환급의 소비 진작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20% 정도, 장기적으로는 60% 정도라는 연구결과도 있다⁹⁾.

〈표 II-2〉 과거 미국의 세금 환급액의 용도별 사용 비중

(단위: %)

	용도별 사용 비율			
	저축	부채상환	소비	합계
2001년 세금 환급	33.8	44.9	21.3	100.0
2003년 육아비 공제	27.0	49.0	24.0	100.0
2003년 원천징수 유예	36.8	42.5	20.7	100.0
2008년 세금 환급	37.4	40.2	22.4	100.0

주: 2008년 수치는 미국 전국소매협회(NRF)의 소비자 의향 및 행태조사 결과임.
자료: 『금융포커스』, 제17권 33호, 2008. 6. 6.~6. 13.

한편 이러한 세금 환급 정책의 소비 진작 효과가 상당히 크게 관찰되었다는 연구도 있다. Broda · Parker(2008)에 따르면 2008년 세금 환급의 경우에 수혜가구들은 4주 이내에 비내구재 소비를 시행 4개월 전후 대비 평균 3.5% 증가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¹⁰⁾. 아구스 리서치는 2008년 4월, 세금 환급분 중 약 28% 정도가 소비로 연결되어 2/4분기 경제성장률을 0.8%p 높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IMF 역시 2008년 6월 20일 미국 경제자문 보고서를 통하여 미국의 세

9) 신용상(2008).

10) Broda & Parker(2008).

금 환급 정책이 물가상승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이지만 총수요를 증대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정책의 시의 적절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리먼 브라더스 역시 2008년 4월에 세금 환급과 당시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금리인하 결정 등이 효과를 내면 경제성장률이 2/4분기에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¹¹⁾.

2008년의 소득세 환급 정책이 실시될 시기의 소매업체 매출액에 대해 조사한 결과도 일부 긍정적인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톱슨 로이터에서 2008년 6월 5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5월 미국 소매업체의 동일 점포 매출이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였던 1.2%의 두 배를 다소 상회하는 수치였다.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세금 환급으로 늘어나게 된 가처분소득을 일상적인 생활용품 소비는 물론 고가의 물품구매에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¹²⁾.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업 체인인 월마트의 경우에도 2008년 5월 동일 점포 매출이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대형 할인매장 체인인 코스트코는 동일 점포 매출이 9% 증가하였다¹³⁾.

11) 박형수(2008), p. 8.

12) 프랭크 베달로 TNS 이코노미스트의 견해로, 박형수(2008)에서 재인용함.

13) 박형수(2008), p. 8.

〈표 II-3〉 2008년 경기 진작법 시행에 따른 재정수지 변화

(단위: 십억달러)

	2008	2009	2010~18	2008~18
세금 환급	-106.7	-10.0	-	-116.7
세금 환급 비용	-0.2	-0.1	-	-0.3
소규모자영업 투자금액 비용처리 한도 확대	-0.9	-0.6	+1.4	-0.1
기업 투자금액 특별상각 허용	-43.9	-5.6	+42.1	-7.4
Fannie Mae, Freddie Mac 모기지 매입 및 FHA 보증 한도 확대	-	-	-	-
합 계	-151.7	-16.3	+43.5	-124.5

자료 : 미 의회 Joint Committee Taxation, 박형수(2008), p. 26에서 재인용.

대규모 조세 환급 정책의 시행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부시 대통령의 2009회계연도 예산안에서는 소득세 환급 등을 모두 포함한 “2008년 경기부양법”의 총재정부담을 1,250억달러로 계상하고, 재정적자 규모는 4,100억달러로 추산하였다. 하지만 이후 미국 의회 통합조세위원회(JCT)는 “2008년 경기부양법”의 재정부담이 〈표 II-3〉에 나타난 것처럼 2008회계연도에는 1,517억달러, 2009회계연도에는 163억달러일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따라서 재정부담의 확대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⁴⁾.

실제 세금 환급 조치가 각 가구 단위에서 소비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구 단위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도 역시 다양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2001년과 2008년의 소득세 환급 정책이 가계의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보다 엄밀하게 분석한 연구가 다수 있다. 이

14) 박형수(2008), p. 26.

러한 학술 연구물의 주 내용, 방법론, 결과 및 시사점에 대해서는 일본과 기타국가 등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난 다음, 제2절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나. 일본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다양한 방식의 소비 진작 정책이 실시되었다¹⁵⁾. 1990년대 일본에서는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1980년대 호황에서 일본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였던 민간소비가 급속히 냉각되었다. 이는 연평균 민간소비 증가율의 급격한 감소로 살펴볼 수 있다. 1985~1989년 동안 민간소비는 연평균 4.2% 증가하였으나, 1990~1993년에는 연평균 민간소비 증가율이 2.9%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소득·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환급하거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일본의 조세 환급 정책은 1994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년 동안 매년 소득세의 15~20%를 일시불 현금지급 방식으로 연 2회에 나누어 환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세 환급은 정부부채를 늘어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높은 정부부채는 결국 미래에 조세부담이 증가하여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일본 정부는 따라서 조세 환급 정책을 펼치면서 이러한 정책이 미래의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밝혔는데, 이는 조세 환급 수혜자들이 현재시점에서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저축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기도 하였다. 실제로도 1997년 소비세가 3%에서 5%로 인상되었고 사회보장세 역시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실질조세부담은 GDP 대비 2%p가 더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1998년에는 소득이 아닌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환급액

15) 이하 내용은 삼성경제연구소(2009), pp. 339~342 등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을 정하였다. 또한 여러 달에 걸쳐 원천징수액을 감액하는 분할현금지급방식이 사용되었다.

1998년 11월 일본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한다. 이 대책은 23조 9천억엔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책을 담고 있었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한 가지는 민간소비의 촉진을 통하여 경기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해 ‘지역진흥권’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지역진흥권’이란 현금 대신 기한이 명시된 일종의 상품권으로 수령 후 6개월 이내인 1999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또한 발행지역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상품권은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었고, 물품구매비, 음식비, 세탁비, 택시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었다. 현금이 아닌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한 이유는 현금의 경우 소비가 아닌 저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품권 형태의 일본 소비쿠폰은 주로 저소득층을 수혜대상으로 하였다. 수혜대상으로는 1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세대주와 노령복지연금, 장애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 아동부양수당 등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생활보호 피보호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이 포함되었다.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총지원 소요액은 7천억엔이었고, 전액 국고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1인당 2만엔씩 약 3,500만 명에게 지급되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경기부양 대책의 방향을 상품권 지급에서 잠정적인 세부담 경감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소득세에 대한 정률감세를 도입하였다. 이는 조세 환급과는 달리 납세액 범위 안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형태의 정책이었다. <표 II-4>에 나타난 것처럼,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의 20% 상당액을 25만엔 한도로 공제하였고, 주민세에 대해서는 세액의 15% 상당액을 4만엔 한도에서 공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세액공제 정책도 재정적자 규모는 증가시킨 반면에 소비 진작에는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후 2006년에는 세액의 공제율과 한도액이 절반으로 감축되었고, 이 제도는 2007년에 폐지되기에 이른다¹⁶⁾.

〈표 II-4〉 일본의 소득세와 주민세 정률감세(1999~2006)

	1999~2005년	2006년	2007년
소득세	세액의 20%상당액을 공제 (25만엔 한도)	세액의 10%상당액을 공제 (12.5만엔 한도)	폐지
주민세	세액의 15%상당액을 공제 (4만엔 한도)	세액의 7.5%상당액을 공제 (2만엔 한도)	폐지

자료: 박형수 (2008), p.11.에서 인용.

2008년에는 제2차 경기대책인 「생활대책」 중 가계긴급지원 내용에 따른 정액급부금 지급이 결정되었다¹⁷⁾.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일본 국민들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었다. 주민의 생활을 지원함과 더불어 급부의 폭을 넓혀 지역의 경기부양 대책에 도움을 주는 데에 목표가 있었다.

정액급부금의 대상자는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자와 외국인 등록증 원표에 등록되어 있는 자였다. 불법 또는 단기체류자는 정액급부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수급자는 급부대상자의 범위에 드는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였다. 급부액은 급부대상자 1인당 1만 2천엔이었고, 65세 이상 및 18세 이하의 경우에는 추가로 8천엔이 지급되었다. 전체 규모는 약 2조엔으로 생활자금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2009년 일본의 정액급부금 정책과 1999년에 실시된 지역진흥권 정책을 비교해 보면 〈표 II-5〉와 같다.

16) 박형수(2008), p. 10.

17) 한국조세연구원(2009), 『주요국의 조세동향』(동향 09-5), 한국조세연구원, p. 124.

〈표 II-5〉 일본의 지역진흥권과 정액급부금 비교

	지역진흥권(1999. 1 ~6월)	정액급부금(~2009.3월)
규모	6,194억엔	2조엔 (부부+자녀 2인 세대 6.4만엔)
대상	저소득층	전세대
유효기간	수령 후 6개월	없음
소비증가효과	2,025억엔(지급액의 32% ¹⁾) 민간소비 0.1%, 실질GDP 0.004%	6,400억엔 ²⁾ 민간소비 0.22%, 실질GDP 0.12%

주: 1) 경제기획청 설문조사

2) 지역진흥권과 동일한 소비증가효과를 가정하여 시산

자료: 미쓰비시도쿄 UFJ은행

신후식·유승선·연훈수,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국 정책대응과 시사점」, 국회 경제위기 대응팀 발간시리즈 제8호, 대한민국 국회, p. 13. 2009. 1. 13에서 재인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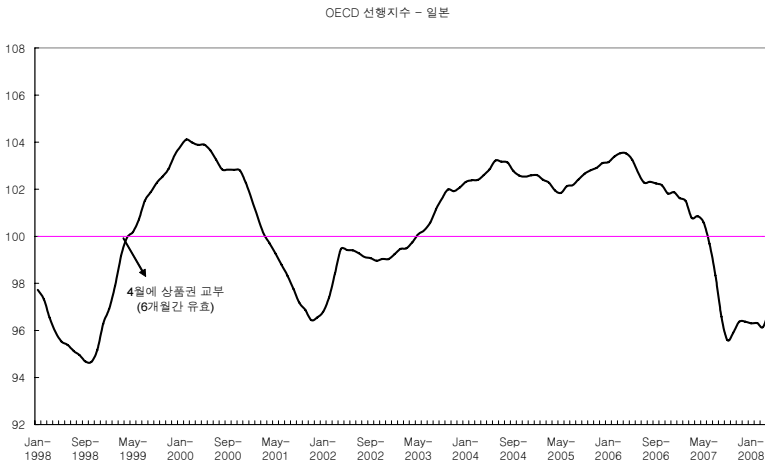
일본에서 이루어진 소비 진작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 및 전망이 이루어졌다. 1999년의 상품권 지급 정책의 경우에는 정부가 기대한 소비 진작 효과보다는 상품권 할인을 통하여 지하경제만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경우에 소비 진작 효과는 미약한 반면 정책의 재정부담은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¹⁸⁾. 실제로도 설문 조사에 따르면 상품권 배부액의 32%만을 소비를 늘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지급 정책의 적시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우선 상품권 지급 정책이 시행된 시점은 일본이 이미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의도하였던 소비 진작 효과가 별다르게 나타나지는 못했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장기불황의 상태에서는 상품권 수혜자들이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 때문에 상품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18) 박형수(2008), p. 10.

증대 효과를 현재소비에 바로 지출하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한 저축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림 II-2]에 나타나는 대로 일본의 상품권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는 경기선행지수로 살펴보면 이미 일본경제가 불황을 벗어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은 상품권 정책을 펼친 이유는 내수 확대를 통하여 경제 상황의 회복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했던 데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¹⁹⁾.

[그림 II-2] 일본의 경기선행지수(1998~2008)



출처: 박형수(2008), p.20.

2008년의 정액급부금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미쓰비시도쿄 UFJ은행의 경우에는 2008년의 정액급부금 수혜 가구가 1999년 지역진흥권과 같은 비율로 수혜액의 32%를 소비할 경우에, 해당 정책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는 0.22%, 실질GDP 증가는 0.12%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²⁰⁾. 이외에도 미시자료를 이용한

19) 박형수(2008), p. 20.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고, 일부 연구에서는 소비 진작 효과가 유효하게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석연구물의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과 내용, 결과는 제2절에서 살펴보겠다.

다. 기타 국가의 소비 진작 정책

미국의 소득세 환급이나 일본의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어 왔다. 중국은 2009년에 소비쿠폰이나 현금 지급을 추진하였다. 대만은 2008년에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였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2008년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구입용 카드를 지급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중국, 대만, 이탈리아의 사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중국은 2009년 주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소비쿠폰이나 현금 지급 정책의 시행을 추진하였다²¹⁾. 난징시 등은 지정된 음식점과 상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행자쿠폰’을 도시 거주민들에게 지급하였다. 지급금액의 총액은 2천만위안에 달하였다. 이 ‘여행자쿠폰’은 주로 낙후된 농촌지역에 위치한 37개 여행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소비 진작을 통하여 경제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항저우 시에서도 2009년 2월, 설날 직전에 저소득층 가구 및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1억위안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지급되었다. 상품권 수혜자는 58만여 명으로 추산되었다. 이 상품권은 주요 200여개 슈퍼마켓과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었으며, 교통요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었다²²⁾.

대만의 경우에는 2008년 9월, 1,226억NT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였고, 이 중 850억NT달러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하였다. 소비쿠폰의 수혜 대상은 대만 호적의 전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 호적자, 대

20) 신후식·유승선·연훈수(2009).

21) 삼성경제연구소(2009), p. 341.

22) <http://english.cri.cn/7146/2009/03/10/1721s462226.htm>

만 주민의 대륙·홍콩·마카오 배우자, 2009년 3월 말 이전에 태어나는 영아를 포함한 총 2,326만여 명에 달하였다. 지급액은 1인당 3,600NT달러였고, 이는 당시 한화로 약 14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었다. 이러한 대만의 소비쿠폰 지급 정책에 따라 백화점 매출이 10% 늘어나는 등 소비 진작 효과가 다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³⁾.

이탈리아 정부는 2008년 11월 28일 저소득층 지원, 기업의 부가세 납부시기 연기 등이 포함된 8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다. 이 경기부양책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구입용 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생필품 구입용 카드는 매월 40유로를 지원하였고, 대상자는 약 130만 여명에 달하였다²⁴⁾.

2. 선행연구 검토

가. 미국 조세 환급 정책에 대한 연구

미국의 2001년과 2008년 조세 환급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주로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조세 환급 정책이 수혜 가구의 소비지출을 늘리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하에서는 Shapiro and Slemrod(2003), Johnson, Parker, and Souleles(2006), Agarwal, Liu, and Souleles(2007), Broda and Parker(2008), Shapiro and Slemrod(2009)에 대하여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론 및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Shapiro and Slemrod(2003)은 2001년 미국 연방정부의 조세 환급금 지급 정책이 가계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구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합하고 분석하였다. 이들의 조사는 미국 전역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2001년 8월, 9월 및 10월 동안

23) '대만, 주민에 소비쿠폰 지급', 파이낸셜뉴스, 2009. 1. 19.

24) 신후식·유승선·연훈수(2009), p. 20.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직 전체 가구 중 21.8%만이 소득세 환급에 따라 소비지출을 늘렸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이 자료는 실제 지출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응답자가 설문문항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제출한 결과를 살펴본 것이므로 다양한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8%는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Johnson, Parker, and Souleles(2006)는 소비자 지출 조사(the Consumer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2001년 연방소득세 환급(the 2001 federal income tax rebates)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국에서는 2001년 경제성장 및 조세경감 조정법(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에 따라 2001년부터 가장 낮은 소득세구간의 세율을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2000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판별하여 2001년의 조세경감액을 소득세 환급 수표로 연중에 선환급하였다. 이 구간은 독신 개인 소득 신고자의 경우에는 6,000달러 이하, 혼인 후 통합 신고 부부의 경우에는 12,000달러 이하였다. 따라서 미국 전체 가구의 2/3에 대하여 통상 300달러 내지 600달러의 환급이 이루어졌다. 소득세 환급은 수표를 발행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우편 배송 시기는 환급 수령자의 사회보장번호에 따라 결정되었다. 따라서 실제 배송이 이루어진 시기는 2001년 7월 하순부터 9월말까지였다. 총환급액은 약 380억달러였고, 이는 같은 해 GDP의 1.5%가량에 해당하였다.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는 각 개인이나 가구의 특성과 관계없이 임의로 부여된다. 따라서 Johnson, Parker, and Souleles는 가구에 따라 임의로 정해진 환급액 수표의 배송시기 차이를 이용하여 연방소득세 환급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었다. 분석에는 소비자 지출조사의 월간 자료가 사용되었고, 개인 및 가구의 특성에 대해 통제하였다. Johnson, Parker, and Souleles가 사용한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C_{i,t+1} - C_{i,t} = \sum_s \beta_{0s} * month_{s,i} + \beta'_{1i} X_{i,t} + \beta_2 R_{i,t+1} + u_{i,t+1}$$

위 식에서 C 는 소비지출 또는 로그소비지출을 의미한다. $month$ 는 각 월별 더미변수이다. X 는 나이와 가족 구성 변수 등 통제 변수들을 의미한다. $R_{i,t+1}$ 은 조세 환급 정책분석을 추정하기 위한 핵심 변수인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각각 구성되었다. (i) 가구 i 가 $t+1$ 기에 지급받은 총환급액수. (ii) 가구 i 가 $t+1$ 기에 환급을 받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iii) 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연(lag)효과 변수로 추가된 (i)이나 (ii).

이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미국의 가구는 환급액의 20% 내지 40%를 환급수표 수령 후 3개월간 비내구재 소비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환급수표 수령 이후 6개월 동안의 비내구재 소비 증가는 환급액의 약 2/3에 해당하였다. 또한 이들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소비 진작의 효과는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garwal, Liu, and Souleles (2007)는 같은 미국의 2001년 연방소득세 환급 정책의 효과를 신용카드 계좌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의 분석 방법은 Johnson, Parker, and Souleles와 유사하다. 연방소득세 환급 수표의 배송시기가 임의로 주어진 점을 활용하여, 각 월 신용카드의 사용액, 납부액, 그리고 잔여부채액 자료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추정 모형은 다음 식과 같다.

$$Y_{i,t} = \alpha' time_t + \beta_0 R_{i,t} + \beta_1 R_{i,t-1} + \beta_2 R_{i,t-2} + \dots + \beta_9 R_{i,t-9} + \epsilon_{i,t}$$

여기에서 $R_{i,t}$ 는 신용카드 소지자 i 가 t 월에 조세 환급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변수이다. 종속변수인 $Y_{i,t}$ 는 앞서 언급한대로 매월 신용카드 사용액, 납부액 및 잔여부채액을 나타낸다. $time$ 은 모든 월을 지시하는 더미변수의 벡터이다. 이러한 형태의 월별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저자들은 계절성, 경기변동 요인, 통화정책의 변화 등에

대하여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Agarwal, Liu, and Souleles가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2000년 6월 현재 개설되어 있는 7만 5천여 개의 신용카드 계좌로, 이후 24개월간의 월간 정보를 담고 있다. 지급정지, 연체, 해지된 계좌는 표본에서 제외되었다. 자료에 수록된 정보는 매월 발행되는 카드이용실적 및 납부고지서에 나오는 수치들로 구성되었는데, 총월간사용액, 잔고, 이월액, 한도 등의 다양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다.

Agarwal, Liu, and Souleles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소비자들은 소득세 환급액을 처음에는 신용카드 납부액을 늘려 잔여부채의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미국의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한도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규모의 잔여부채액을 유지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인 신용카드 사용한도의 규모를 늘리는 저축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저축 증가 효과는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로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상쇄 효과가 큰 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서는 잔여부채액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Broda and Parker (2008)는 2008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이루어진 미국 연방정부의 조세 환급 정책이 가계 소비지출에 미친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008년에는 총 1천억달러에 달하는 조세 환급 정책이 실시되었고, 2008년 7월 1일까지 7천만 가구에게 평균 950달러의 조세 환급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논문은 조세 환급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AC Nielsen의 홈스캔(Homescan)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각 가구에서 바코드 스캐너를 이용하여 다양한 비내구재 소비정보를 직접 입력하므로, 대형 매장, 아울렛,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서 이루어진 소비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2008년 6월 14일까지 조세 환급금을 수령한 가구와 수령하지 못했지만 차후에 받게 될 예정인 가구를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

에서 사용된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ln C_{ht} = \gamma_h + \gamma_t + \beta I(\text{Rebate} > 0)_{ht} + \epsilon_{ht}$$

여기에서 C_{ht} 는 가구 h 가 t 기에 지출한 비내구재 소비액이고, 두 개의 γ 는 각각 가구 고정효과와 주 고정효과를 의미한다. I 는 가구 h 가 t 기에 조세 환급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지시함수이다.

Broda · Parker가 찾은 결과에 따르면 조세 환급 정책은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금을 수령한 가구는 수령시점에서 아직 해당 환급금을 수령받지 못한 가구에 비하여 식료품, 공산품 및 의약품 지출을 3.5% 증가시켰다. 저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는 비내구재 소비에 대한 2008년 2/4분기의 총수요를 약 2.4% 증가시키고, 3/4분기에는 4.1%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규모의 효과였다.

Broda · Parker는 같은 논문에서 조세 환급 정책의 분배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들이 찾은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 및 보유자산이 적은 계층은 조세 환급금 수령의 효과로 평균적인 가구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이 지출을 늘리는 효과를 보였다. 한편 소비자들은 조세 환급금을 수령한 이후로 월마트(Walmart)나 타겟(Target) 같은 대형매장에서 소비를 더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세 환급금 수령에 따른 소비지출의 증가 대상은 식품이나 의류 보다는 내구재와 개인 서비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세 환급금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는 지리적으로도 변동을 보였다. 로스앤젤레스와 미국 남동부 지역 주민들은 미국의 다른 대도시 지역 주민들보다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Shapiro and Slemrod(2009)는 지난 2001년과 마찬가지로 2008년의 조세 환급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직 다섯 명의 응답자 중 한 명 정도만이

소득세 환급이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비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응답자의 약 절반 정도는 소득세 환급금을 부채 청산에 활용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같은 저자들의 2003년도 연구자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과는 상당히 놀라운 것으로 보이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던져준다. 물론 설문자료 분석에서 나오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미시 소비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와 설문자료 분석결과와 왜 다르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일본의 상품권 지급 정책에 관한 연구

일본의 1999년 상품권 지급 정책이 가계소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주로 미시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각 연구물들은 다양한 함의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가운데 Watanabe, Watanabe, and Watanabe(2001), Hsieh, Shimizutani, and Hori(2010) 및 Shimizutani(2006)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겠다.

Watanabe, Watanabe, and Watanabe(2001)는 상품권 지급 정책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일본의 조세정책이 소비자들의 지출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들은 1975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세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임시적 변화와 항구적 변화 사이에 소비자들의 소비지출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대가 이루어졌던 조세제도 변화와 기대하지 못하였던 조세제도 변화 사이에 소비자들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임시적인 조세제도의 변화는 항구적인 조세제도의 변화에 비교하여 소비지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

우 미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자들은 일본 소비자의 80% 이상이 조세정책의 변화가 발표되는 시점이 아니라 실행되는 시점에 반응하여 소비지출 양상을 바꾼다는 점을 찾아내었다.

Hsieh, Shimizutani, and Hori(2010)는 1999년 일본의 상품권 지급 정책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가구소득지출조사(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자료와 통상현황조사(the Current Survey of Commerce)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본의 상품권 지급 정책은 1998년 11월 발표된 23조 9천억엔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고, 총예산 7천억엔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국민 3,500만 명에게 1인당 2만엔 상당의 상품권을 1999년 3월에 배포하였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노령복지연금·장애기초연금·유족기초연금·아동부양수당 등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생활보호 피보호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였다. 상품권은 '고향쿠폰'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되었는데, 1999년 9월까지 6개월간 유효하였고, 원칙적으로 발행 지역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였다. 이때 각 가정에 배포되는 쿠폰의 수는 비노령인구의 경우에는 15세 이하 자녀의 수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우선 가구별 15세 이하 자녀의 수에 따라 수령하는 상품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품권이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때 가구별 자녀 수에 따른 지출구조의 차이에 나타날 수 있는 계절성 요인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상품권이 지급되기 이전인 1990년부터 1998년까지의 지출 자료도 분석에 함께 사용하였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추정 모형은 다음과 같다.

$$\log\left(\frac{C_{h,t}}{C_{h,february}}\right) = a_1 * \left(\frac{20,000 * children_h * I_{1999}}{Income_h}\right) + Z_h * a_2 + Year * a_3 + \epsilon_{h,t}$$

이 식에서 h 는 각 가구를 의미하고, t 는 각 월을 의미한다. C 는 실질 월간 소비지출액이고, 종속변수는 각 월 소비지출액을 2월의 소비지출액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환산한 수치에 로그를 취한 값이다. 우변의 첫 번째 항이 상품권 지급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인데, 소득에 대비하여 상품권 지급액의 상대적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즉, 각 가구에서 15세 이상 자녀당 2만엔씩 상품권을 지급받은 것으로 가정한 다음, 1999년일 경우에 1의 값을 취하는 지시함수를 곱하고, 다시 전체 값을 가구소득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 변수를 구축하였다. 나머지 우변의 항들은 각각 기타 통제요인 변수들과 연도 더미 및 교란항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품권은 지급된 달의 준내구재(semi-durables) 지출을 다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비내구재나 용역 소비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또한 준내구재 소비의 경우에도 상품권이 지급된 달에만 효과가 나타났고, 그 다음 달부터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1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 진작효과만을 살펴본 것이고, 주로 노년층인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등에 대한 상품권 지급 효과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도도부현 단위 총 소매업 매출액이 각 지역별 상품권 수령자 비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다시 살펴보았다. 소매업 매출액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품권 지급 효과가 3월부터 7월까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Shimizutani(2006)는 1998년 일본의 일시적인 조세감면 패키지(소득세 및 주민세)의 소비 진작 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본 정부는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을 타개하고자 일정 소득에 이를 때까지 소득세를 면세하는 등 1998년 2월(소득세), 6월(주민세), 8월(소득세) 세 차례에 걸쳐 총 4조엔(약 400억달러) 상당의 감세조치를 단행하였다. 저자는 1990~2000년도 일본 가계소득소비자료(FIES: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를 이용하여 감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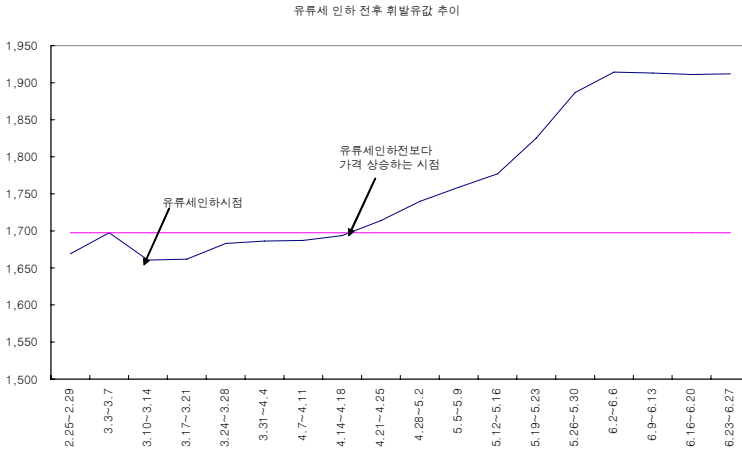
이 논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시성을 가진 한시적 감세는 전통적인 생애소득 및 항상소득가설(the life-cycle and permanent income hypothesis)에 기반하여 예측된 것과 달리 상당히 큰 폭으로 가계 소비지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한계소비성향이 0.6에 달할 정도로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소비지출은 주로 서비스와 비내구재(식품, 의류 등)에 집중되었다. 유동성 제약을 크게 받는 가구들에서의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났다. 다만 감세가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소비지출 효과 역시 일시적이었으며 그 효과는 감세 정책이 종결된 직후 곧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면, 저자는 일시적·한시적 감세를 통해 한계소비성향 0.6 정도의 소비지출 증대효과가 나타났지만,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지 못하여 경제적으로는 유의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Ⅲ. 유가환급금·종합부동산세 환급 제도 및 현황

1. 유가환급금제도

정부는 2008년 6월에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유가 환급금 제도를 발표하였다. 유가환급금 제도는 중산 서민층에 대하여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서, 같은 해 9월 18일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27~34)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2008년 3월 10일부터 한시적으로 수송용 유류(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정책(현행 세율이 10% 수준 인하되도록 탄력세율 조정)을 실시하였으나 국제유가의 상승추세로 인해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제로 유류세 인하 후 이렇게 인화된 소비자가격이 지속된 기간은 휘발유가 9일, 경유가 8일에 불과하였으며 LPG만 51일 정도를 지속하였고, 휘발유의 경우 40여일 만에 유류세 인하 전보다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였다.

[그림 III-1] 유류세 인하 전후 휘발유값 추이



자료 : 한국석유공사 「주간유가동향」, 박형수(2009)에서 재인용

유류세 인하 정책은 유류가격이라는 특정 재화의 가격 인하를 통해 고유가로 인한 유류소비 감소를 완화시키므로, 유류소비가 많은 고소득 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유가환급금 지급 정책은 반면에 고유가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중·저소득 계층의 세후소득을 증가시켜 근로자들의 대중교통요금을 보조하자는 취지로 만들었으나 증가된 세후소득을 유류 이외의 소비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민간소비지출을 증가시켜 경기부양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사실 정책담당자에 따르면 유가환급금 제도 시행을 발표한 시점에서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2008년 말 경제위기를 맞아 11~12월에 지급된 3조 7,000억원의 유가환급금이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정책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유가환급금의 수혜 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중 근로를 제공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활동을 영위한 자로 한정하여 퇴직자, 실업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자녀 수에

III. 유가환급금·종합부동산세 환급 제도 및 현황 47

따른 추가 수혜 혜택은 고려되지 않았다. 유가환급금 제도는 애초에 중산 서민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적용하였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2007년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제외)이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200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자에 한해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20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해서 환급대상에 포함되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유가환급금 제도 초안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안에서 지급대상에 포함되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의 기간중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일용근로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이 되었다.

유가환급금 지급금액은 2007년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소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커지도록 설계되었다. 최대 지급금액으로 24만원을 결정한 이유는 유가환급금 정책이 애초에 근로자들의 대중교통요금을 보조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한 달에 20일을 일하고 하루 교통비로 2,000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48만원의 교통비가 발생한다. 이 중 절반을 정부에서 보조하자는 의미로 24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환급금액은 2007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 III-1>과 같이 결정되었다.

〈표 Ⅲ-1〉 소득금액에 따른 유가환급금

(단위: 만원)

근로자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¹⁾	
총급여	환급금	종합소득금액	환급금	총급여	환급금
3,000만원 이하	24	2,000만원 이하	24	3,000만원 이하	24
3,000~3,200	18	2,000~2,130	18	3,000~3,200	18
3,200~3,400	12	2,130~2,260	12	3,200~3,400	12
3,400~3,600	6	2,260~2,400	6	3,400~3,600	6
3,600~	0	2,400~	0	3,600~	0

주: 1) 일용근로자의 경우 2007년 7월~2008년 6월 기간중의 총급여를 급여 80만원을 1개월로 간주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함.

즉, 〈표 Ⅲ-1〉에 따라 결정된 환급금을 다음과 같이 2008년 근로(사업)월수로 월할 계산하여 최종 지급금액이 결정되었다.

$$\text{유가환급지급금액} = \text{소득수준별 유가환급금} \\ \times 2008\text{년 근로(사업)월수} / 12 \text{ (1년)}$$

유가환급금 수혜대상은 2007년 기준소득(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으로 전체 근로자 중 71%, 전체 사업소득자 중 85%에 달하여 약 1,700만명에 이르고, 총지급액 규모는 근로자 2조 2,800억원, 자영업자 8,600억원, 일용근로자 3,500억원을 합하여 3조 5,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원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향후 1년간의 수입분 부가가치세 증가분 3.0조원 및 관세 세수 증가분 2,000억원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번 유가환급금은 1회성 지출이고 소요재원 전액을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증대 및 세원투명성 제고에 따른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충당할 계획이므로 재원조달 등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III. 유가환급금·종합부동산세 환급 제도 및 현황 49

국세청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유가환급금 지급을 시작하여 2008년 말까지 총 1,435만명에게 2조 6,520억원의 유가환급금을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령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표 III-2>는 유가환급금 지급현황을 수혜 대상별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근로자 742만명에게 총 1조 5,298억원, 자영업자 266만명에게 5,603억원, 인적용역 제공자 78만명에게 1,403억원, 일용근로자 349만명에게 4,216억원이 지급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2> 수혜 대상별 유가환급금 지급 현황

(단위: 만명, 억원, %)

구분	근로자	사업자등록자	인적용역 제공자	일용근로자	합계
인원	742 (51.7)	266 (18.5)	78 (5.4)	349 (24.3)	1,435 (100)
금액	15,298 (57.7)	5,603 (21.1)	1,403 (5.3)	4,216 (15.9)	26,520 (100)

주: () 안은 비율을 의미

자료: 국세청 보도자료(2008년 12월 29일)

국세청은 당초 예상한 1,700만명 규모의 대량 지급체계를 갖춘 일괄 환급시스템을 최단기간에 구축하고, 107개 세무서에 신청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하여 신청서를 작성,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하고 확인을 거쳐 11월 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입금하였고,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지급하였다²⁵⁾. 또한

25) 근로소득자와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환급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신청에 따른 선택편의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청 절차를 거쳐야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2월 중에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였다. 원활한 환급을 위해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를 개설하여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여부, 지급액, 신청 절차 등의 궁금한 사항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²⁶⁾.

실제 지급된 금액이 당초 예상했던 환급금 지급인원 및 금액보다 줄어든 이유는 2008년도에 12개월 근무를 하지 못한 근로자의 월수계산 감소와 극심한 근로형태의 변경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퇴직 등으로 지급 제외된 경우(80만명),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32만명), 외국인 출국근로자(25만명), 사망·말소(10만명), 순수 미신청자(68만명) 등이 당초의 지급예상 인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2008년 중에 신규로 취업하거나 개업을 하여 2007년 기준소득이나 급여가 없는 환급대상자들은 2009년 5월에 환급신청을 하면 2009년 6월 중에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²⁷⁾. 또한 유가환급금은 근로장려세제와는 달리 체납세액이 있는 납세자도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체납세액에 충당하거나 압류하지 아니하고 전액 지급되었다.

서 파악하고 있는 미신청자 68만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가환급금의 효과분석을 위한 추정단계에서 선택편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신청자 비율이 전체 환급인원의 5% 미만이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분석에 고려하지 않았다.

- 26)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무려 600만명에 이를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다.
- 27) 2008년에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2007년 소득이 없는 신규근로자·신규사업자와 2008년 신청기한 이후 채용자·사업자등록자로서, 연말정산한 근로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008년 근로(사업)월수로 계산한 환급금을 받게 된다.

2. 종합부동산세 환급

참여정부는 2005년부터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를 대폭 개편하였다.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개인별 보유 주택 가액의 총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배경은 크게 기존 보유세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2000년대 초반 이후 급등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참여정부는 불로소득 및 자산소득의 불균등한 분포가 국민계층 간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부동산 투기 소득이 다시 부동산 투기로 유입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형성한다는 판단 하에 소득재분배와 부동산 투기 억제의 관점에서 부동산세제를 개편하였다. 각 개인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을 합산하여 일정액 이상인 경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는데 주택의 경우 인별 보유액이 공시가격 기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3%의 세율로 과세하였다.

2004년에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부동산 가격이 2005~2006년에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타지역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한 정부는 2005년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고,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여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며, 동시에 양도세 중과규정을 2주택 보유자로 확대하는 등 부동산 과세를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일부 고가의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등 주택으로부터 발생하는 기대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담을 급격하게 증가시켰는데 2006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인별합산

방식에서 세대별합산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금액이 각각 9억원, 6억원에서 2006년부터 6억원, 3억원으로 인하되었으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최저 세율구간이 추가되고 기존의 최저 세율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이 인상되었다. 이와 더불어 과표적용률도 인상되고 세액산출 방식도 변경하였다²⁸⁾²⁹⁾.

소득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단기간의 급속한 세부담 증가는 납세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조세저항에 직면하였다. 또한 과세표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시가의 과표적용률을 매년 상승시키다 보니 시가가 하락하는데도 과세표준과 세부담은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³⁰⁾. 결국 특정 지역의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 변동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³¹⁾.

이렇듯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던 가

-
- 28) 과표적용률 인상: 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은 2005년 50% → 2006년 70%(이후 2009년까지 매년 10%씩 상승), 별도합산토지분은 2005년 50% → 2006년 55%(이후 2015년까지 매년 5%씩 상승)
- 29) 세액산출 방식의 변경: 2005년은 과세표준 산출시 과표적용률을 적용하였으나 2006년 이후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과표적용률을 적용하였다.
- 30) 특정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2006~2007년 한 해 동안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600% 이상 급등한 경우도 있었는데 과천시 주공 4단지 45평형의 경우 2006~2007년 한 해 동안 공시가격은 35% 정도 증가한 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665% 증가하였다.
- 31) 2007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세액은 2005년 대비 4.3배로 증가하였고 특히 개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신고세액은 42.3배로 폭등하였다. 2007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인원은 2005년 대비 6.8배로 증가하였고, 그 중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신고인원은 2년간 11.0배로 증가하였다. 종합부동산세가 인별 합산이 아닌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납세자 수 증가의 정도는 수치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인 납세자의 신고인원당 신고세액은 3.8배로 증가하였다.

운데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13일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하여 위헌, 그리고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고 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주택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기 때문에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³²⁾. 헌법재판소는 또한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장기보유자가 아니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자에 대한 일률적·무차별적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판단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였다. 첫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보유의 동기나 기간, 조세 지불능력 등과 같은 정책적 과세의 필요성 및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둘째,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가 없기 때문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그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반영하여 정부는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방식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결과에 따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제도가 시행된 2006년 및 2007년에 세

32) 특히 헌법재판소는 세대별 합산으로 인한 불이익(세부담 증가)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조세회피의 방지 등 공익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세회피의 방지와 경제생활 단위별 과세의 실현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공익은 입법정책상의 법익인 데 반해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는 헌법적 가치라는 것을 고려할 때 법익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대별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함에 따라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 초과분을 환급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즉, 종합부동산세 환급대상은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2006년과 2007년에 신고납부한 사람들로, 이들에게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한 뒤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돌려주었다. 환급액은 2006년분이 약 2,200억원이고 2007년분이 약 4,100억원이며, 대상인원은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2만명, 16만명이지만 중복을 감안하면 20만명에 이른다³³⁾. 환급금 지급은 2008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인 12월 15일 이전까지 신속하게 완료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은 거주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부과규정을 보유기간·재산·소득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2009년 말까지 법개정을 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과 납세자의 세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³⁴⁾. 주요내용은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에 한하여 기초공제 3억원을 허용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단기간에 세부담이 급등하여 발생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구간 및 세율, 세부담 상한액을 조정하였다. 과세표준이 시장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를 고려하여 2009년부터 법률에서 정하던 연도별 과표적용률을 대통령령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하였다³⁵⁾.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33) 2005년의 경우 '인별 합산과세' 체계에 의해 과세됐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과세 위험에 따른 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4) 정부는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에 소급적용된 세부담 경감에 관한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을 2008년 12월 26일에 공표·시행하였다.

35)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80%,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80%,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80%(단, 2009년 70%, 2010년 75%).

금액을 조정하였다³⁶⁾.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이 위헌결정을 받아 법의 효력이 바로 없어진 반면 헌법불합치 판결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현행 법규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1주택자는 새로운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2008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이미 납부기한이 넘은 2008년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여 2009년 1월에 환급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경감대상인 주택분 및 종합합산토지분 납세자 중 기한내(2008년 12월 15일)에 2008년분 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했거나 신고·납부한 35만 4천명이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재계산한 세액과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해당 납세자는 과표적용률이 90%에서 80%로 인하됨으로써 납부한 세금 중 13% 또는 16%를 환급받았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중 5년 이상 보유 또는 60세 이상인 자의 경우는 이에 세액공제분(10~70%)을 더해 환급을 받았다. 한편,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과 관련해서 환급이 보류되었던 무신고자에 대해서도 2009년 1월에 감액을 결정해 환급을 시행하였다³⁷⁾.

2008년 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관계 법령에 따라 2009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1만명으로 전년도 대비 20만 2천명이 감소하였다. 개인 주택분 납세자만 보면 15만 8천명으로 전년도 30만 5천명보다 14만 7천명 감소하였는데 이는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의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인상되고,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세수입을 살펴보면 2009년 종합부동

36) 주택분: 세대별 공시가격 합 6억원 → 개인별 공시가격 합 6억원(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 금액 9억원으로 인상),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세대별 3억원 → 개인별 5억원, 별도합산대상 토지분: 인별 40억원 → 인별 80억원.

37) 국세청 관계자는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환급금으로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산세 부과고지 세액은 1조 235억원으로 2008년 최종부과고지 세액(2조 3,280억원)보다 1조 3,045억원 감소하였다. 이 중 개인 주택분은 1,523억원으로 지난해 최종 고지세액 7,276억원보다 5,753억원 감소하였는데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 인상(6억원 → 9억원) 및 세율 인하,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2009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하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재정패널자료에 나타난 유가환급금·종합부동산세 환급 현황

본 연구에서는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재정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제3절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재정패널 데이터 개요를 소개하고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를 이용하였는지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초통계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가. 재정패널 데이터 개요³⁸⁾

1) 조사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2007년 1월 개정된 ‘국가재정법’으로 인해 세금제도 개편 시 정책효과와 제시가 선행되어야 하고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 국세청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가구 단위의 조세·지출·복지에 관한 포괄적 데이터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의 확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위협받고 있으며

38) “가”항은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행한 2차(2009)년도 재정패널 기초분석보고서를 발췌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역할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정책과 행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 조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재정패널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즉, 재정패널은 가계의 조세부담 및 가계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담과 혜택의 공평성 및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지출의 불합리성과 국민의 부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기획된 재정패널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 국가와 개별 경제주체인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예를 들어, 조세제도가 개편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예측하고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후생증가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조세에 대한 부담과 복지 수혜자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패널 데이터는 소득, 지출, 조세, 복지수혜를 포괄하는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국민들의 조세부담과 복지수혜의 연계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조세모의실험 운용을 위한 패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조세모의실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납세정보와 함께 납세자들의 자산, 소득, 소비지출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수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재정패널 조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패널 데이터가 구축되면 조세와 재정의 재분배 효과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개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 평가가 가능해진다. 기존의 연(年)단위분석에서 패널 데이터로 인해 연간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조세와 재정정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에 관련된 통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산되고 있는 조세, 재정관련 통계의 경우 분석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연구 주기가 단기이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정패널조사를 통해 국가통계에 준하는 패널 데이터가 종단면적으로 다양하게 생산됨으로써 조세, 재정관련 통계 인프라가 재편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학문적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으로 연구 활성화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조세, 재정분야의 경우 연구의 특성상 상당부분 데이터에 의존하는 계량적인 연구가 필수적인데 재정패널을 통해 데이터의 부재로 그동안 연구가 불가능했던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학문과 정책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2) 조사 개요

재정패널 조사는 1차(2008)년도에 구축된 전국(제주도 제외) 5,014 가구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1차년도 표본 가구의 가구원이 결혼, 취업 등의 사유로 분가하였을 경우 분가한 가구원을 찾아가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가구원의 변동으로 인한 경제활동과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차년도 표본 추출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주로 이용했으며, 2005년 이후 신축된 아파트 리스트를 추가적인 표집틀로 활용하였다.

재정패널 조사는 전술하였듯이 가구의 조세 내역·소득공제 내역 및 가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복지혜택의 파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소득수준 상위 10% 이상 고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주된 관심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계층에 속하는 표본의 수가 충분히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여 일반적인 방식의 표본추출 대신 고소득층에서 300가구, 저소득층에서 300가구 정도를 추가로 표집(oversampling)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고소득층 밀집 지역은 부동산 가격 등 기존 통계나 경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네 지역을 선정했

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서초·강남·송파·분당과 같은 고소득층 밀집 주거 지역을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고소득층 과대 표집 지역은 수도권으로 한정했다. 그 다음 해당 지역의 각 조사구를 주택 평균면적을 기준으로 정렬한 뒤, 정렬된 조사구 중 상위 50% 이상에 해당되는 위치에서 조사구를 과대 추출했다. 저소득층 분포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 통계를 활용했다. 먼저 15개 시도의 읍면동별로 기초수급 가구의 비율을 구한 뒤, 이 비율이 15% 이상이 되는 144개 읍면동을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선정했다. 그런 다음 해당 읍면동에 있는 일반 조사구를 주택 평균 면적에 따라 2개 층으로 구분했고, 하위 50% 층에 해당되는 조사구를 과대 추출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재정패널 조사의 조사표는 가구 조사표와 가구원 조사표로 구성된다. 가구 조사표는 가구의 현황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구원 조사표는 15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상태, 연간소득이나 소득세 납부액, 소득신고 현황에 대한 설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차(2009)년도 조사는 2009년 5월~9월 사이에 진행되었는데 조사표에서 측정하는 기준 시점은 2008년이며, 조사항목 중 유량(flow)을 측정하는 질문은 2008년 1월~12월 간의 1년을 기준으로 조사했고, 저장(stock)은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단, 가구원 조사표의 경제활동 상태는 조사 시작 시점인 2009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2008년도에 구축되었던 패널가구 중 2009년도에도 조사에 성공하여 패널로 유지된 가구는 모두 4,396가구로 패널 유지율은 87.7%이다. 소득과 자산, 세금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점과 수도권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할당된 표본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비교적 양호한 유지율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패널 데이터만의 특성을 들자면 2차년도 조사에서 대체표본을 구성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정패널을 비롯하여 공공부문에서 총 19

종의 패널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한국노동패널이 1998년부터 패널조사를 시작하여 가장 오래되었으며 현재까지 11차년도까지 자료가 구축되어 있다. 여타의 다른 패널조사와는 달리 재정패널에서는 2차년도 조사에서 1차년도에 조사된 원가구의 표본이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였다³⁹⁾. 이렇게 2차년도 조사에서 대체표본을 추가하여 조사한 경우는 국내외를 통틀어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의 패널조사는 종단적 분석이 중요한 연구 목적이므로 기존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에만 집중해 왔으며, 원표본의 이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야 표본의 대체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재정패널조사의 주연구 주제인 가구의 조세·재정 정보는 관련 법·제도의 변화에 따라 연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소득세 납부 유형별로 유의미한 통계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의 표본 확보가 요구된다는 판단아래 2차년도 탈락 표본에 대해서 대체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재정패널 2차년도 조사에서는 원가구 중 618가구의 이탈이 발생하여 원가구의 표본유지율은 87.7%에 머물렀으나 이를 대체하는 대체표본을 발굴하여 표본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조사된 가구 수는 원가구와 대체가구 및 원가구에서 분가한 가구를 포함하여 총 5,094가구에 이르게 되었다. 표본의 대체 방식은 확률추출법에 의거하여 탈락한 표본(n)이 속해 있던 조사구 내에서 가구리스트 정렬 순서상 $n+1 \rightarrow n-1$ 순서로 체계적인 대체를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1차년도 조사 과정에서 표본을 대체했던 방식과 동일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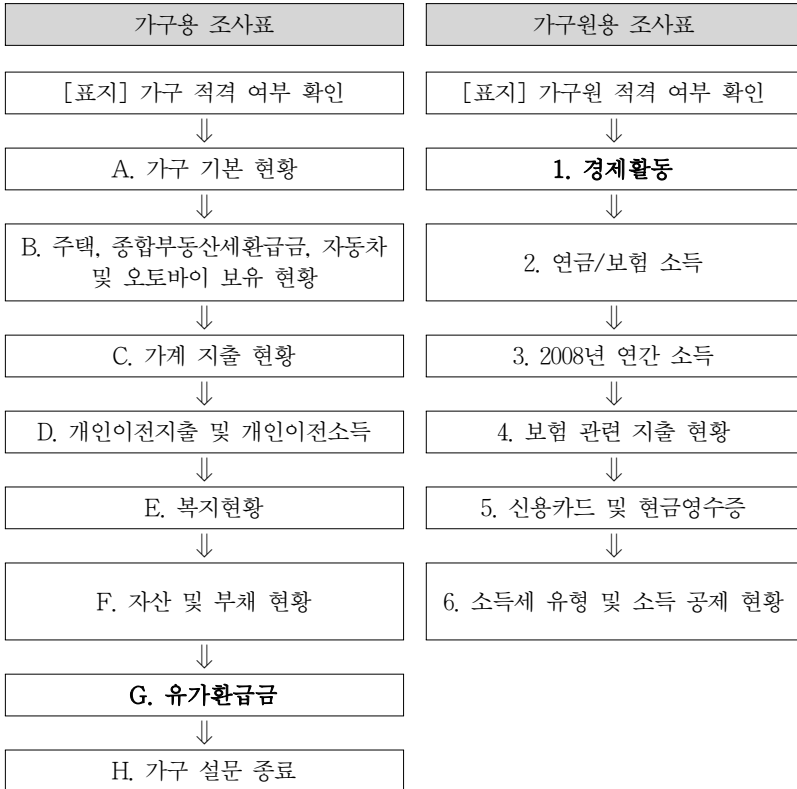
39) 대부분의 패널에서 2차년도 조사에서 가장 많은 표본이탈 현상이 발생한다. 매년 반복적으로 추적조사하는 조사의 성격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응답거절의 사유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패널가구의 이사 등으로 인하여 추적실패의 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패널 조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3차년도 이후 시점부터는 원표본 유지율이 크게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랜덤화의 원리를 이용함으로써 탈락된 표본과 여러 가지 변수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추출된 대체표본이 원가구를 완벽하게 대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체 추출을 통해 얻어진 일부 표본은 2008년도의 가구 소득이나 지출, 조세 부담 등을 횡단면적으로 분석하는 자료로만 활용할 계획이다⁴⁰⁾. 종단적 분석 과정에서는 다른 패널조사와 마찬가지로 2008년 원표본가구 중 재조사에 성공한 표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정패널 조사의 조사표는 가구용과 가구원 개인용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용 조사표는 가구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잘 알며 주로 관리하고 있는 가구원 한 명이 응답해야 하며, 가구원용 조사표는 1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조사대상이 된다. 하지만, 특정 가구원이 다른 가구원의 소득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어도 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정패널 조사 2차년도 조사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0) 이렇듯 2차년도 조사시점에서 원가구를 대체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대체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그리고 이렇게 대체된 표본이 탈락한 표본과 얼마나 유사한 가구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III-2] 2차년도 조사표의 내용



주: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은 2차년도 조사에서 새로이 추가된 조사항목임.

재정패널 데이터에는 기존의 패널 데이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득공제 내역, 결정세액 등의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역을 모든 응답자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소득공제 내역은 각 항목별로 복잡한 기준과 계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금액을 회상해내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래서 소득공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수집하는 것도 조사 내용에 포함시켰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후에 회사에서 받은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연간 소득내역과 공제내역, 결정세액 등의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본 조사에서는 매년 1~2월 경에 근무처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수집 대상이 되었다. 종합소득 신고자는 소득세를 자진 신고하는데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모든 서류를 다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소득공제명세서] 2가지 서류를 수집하고 있다. 매년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올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가 진행되므로 이 기간에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가 수집 대상이 되었다. 단, 방문판매나 보험모집과 같은 사업소득자는 연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수집 서류에 포함시켰다. 이렇듯 재정패널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세모의실험 모형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납세자들의 납세정보 및 각종 인적 특성과 자산·소득·소비지출 등의 경제상황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위해 소득 증빙서류를 수집한 것이다. 소득세 및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수집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점이 재정패널 데이터만의 우수성이라 할 수 있다⁴¹⁾.

41) 모든 가구가 증빙서류 수집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수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업소득자나 금융소득자 중에서도 소득신고를 한 가구원만 수집 대상에 포함됐다. 1차(2008)년도에는 총표본 중 근로소득 수집 대상가구인 2,407개 가구 중 612부의 소득증빙서류를 수집하였으며(수집률 25.4%), 종합소득자의 경우 679개 대상가구 중 49가구의 증빙서류를 수집하였다(수집률 7.2%). 2차(2009)년도에는 근로소득 수집 대상가구인 2,582개 가구 중 1,311부의 소득 증빙 서류를 수집하였으며(수집률 46.6%) 종합소득자의 경우 799개 대상가구 중 211가구의 증빙서류를 수집하였다(수집률 26.4%). 조사 첫 해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 참여율이 저조하였으나 2차년도에는 수집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조사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질수록 수집률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나. 유가환급금 분석에 사용된 자료

재정패널 2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원 중 유가환급금 수혜자가 있는지 여부와 환급받은 가구원의 가구원 번호, 환급금 지급액, 사용 용도, 소비지출 항목, 환급금액 만족도 그리고 환급금 지급절차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가구를 추적 조사하는 재정패널 조사의 패널 특성을 이용하고자 일차차분(First Difference) 모형을 적용하여 이중차분 추정량(Difference in Difference Estimator)을 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⁴²⁾. 1차, 2차년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총 4,396가구 중 1,474가구에서 유가환급금을 받은 가구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⁴³⁾. 유가환급금을 수령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때 수령 가구원 수의 평균은 1.19명으로 가구원 중 1명만 수령한 가구가 전체 수령가구의 82.7%에 이른다.

〈표 III-3〉은 유가환급금을 받았다고 응답한 총 1,750명을 대상으로 인적 특성과 유가환급금 수급액, 2008년 근로월수 통계 및 2007년 말 시점에서의 종사상 지위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연령은 41세이고, 교육연수는 13년에 이르러 고졸 이상의 평균학력을 갖고 있었으며 환급금 수령자 중에 여성의 비율은 36%를 차지하였다. 2008년 평균 근로월수는 11.5개월에 이르고 유가환급금 평균 수령액은 2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65%는 최대 환급액인 24만원을 수령하였다. 재정패널 1차년도 자료에서는 2007년 말 경제활동상태를 질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가환급금 수령자들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66.6%, 일용근로자 6.7%, 자영업자 26.7%의 분포를 보였는데, 이러한 분포를

42) 이중차분 추정량을 구하는 방식은 제IV장 제1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43) 2차년도 응답에서 이탈한 가구, 이들을 대체하여 조사한 618가구 및 2차년도 분가가구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Ⅲ. 유가환급금·종합부동산세 환급 제도 및 현황 65

〈표 Ⅲ-2〉에서 보여준 수혜 대상별 유가환급금 지급 현황과 비교하여 보면 임금근로자 비율은 15% 정도 높게 나타난 반면 일용근로자 비율은 17% 정도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재정패널에서는 2007년 말 시점에서의 종사상 지위만을 조사한 반면 유가환급금은 2007년 1년간의 근로소득 활동에 따라 지급기준이 결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Ⅲ-3〉 유가환급금 지급 현황

(단위: 만원)

	평균	표준편차
연령(세)	41.39	11.19
교육 연수(년)	13.00	2.89
여성 비율(%)	35.60	-
2008 근로월수(개월)	11.43	1.78
유가환급금 ¹⁾	20.14	6.28
2007 임금근로자 비율(%) ²⁾	66.60	-
2007 일용근로자 비율(%) ²⁾	6.69	-
2007 자영업자 비율(%) ²⁾	26.71	-
표본수(N)	1,750	-

주: 1) 1명의 결측값을 제외한 1,749명에 대한 결과임.

2) 2007 종사상 지위 비율은 결측값을 제외한 1,674명만을 대상으로 산정
자료: 재정패널 2차년도

〈표 Ⅲ-4〉는 유가환급금 수령자들이 밝힌 환급금액 및 환급금 지급 절차에 대한 만족도의 기초통계를 보여준다. 유가환급금액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66점을,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평균 3.99점을 나타내 수령자들은 대체로 금액과 지급절차에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4〉 환급금액 및 지급절차에 대한 만족도

(단위: 만원)

	평균	표준편차
환급금액	3.66	0.84
지급절차	3.99	0.77
N	1,750	-

주: 원자료에서는 매우 만족에 5, 매우 불만족에 1점을 부여하였으나 해석의 편의를 위해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변수를 조정하였다.
자료: 재정패널 2차년도

〈표 III-5〉는 유가환급금의 주된 사용 용도에 대한 질문에 환급금 수령자들의 응답을 보여준다. 91%의 응답자가 소비지출에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저축 혹은 카드빚을 포함한 가계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5% 미만이었다. 따라서 유가환급금이 주로 저축이나 부채상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실제로 소비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표 III-5〉의 결과만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로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III-5〉 유가환급금의 주된 사용 용도

(단위: 명, %)

소비지출	저축	가계부채 상환	기타	합계
1,591 (90.9)	63 (3.6)	22 (1.26)	74 (4.23)	1,750 (100)

주: () 안은 비율을 의미
자료: 재정패널 2차년도

〈표 III-6〉은 유가환급금의 주된 사용 용도가 소비지출이라고 응답

Ⅲ. 유가환급금·종합부동산세 환급 제도 및 현황 67

한 1,591명에게 주된 소비지출항목은 무엇인지를 질문한 내용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⁴⁴⁾. 주로 식료품비 지출에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47%로 가장 많았고 주거비(23%), 기타(16%), 교통비(9%), 내구재 구입비(5%)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가환급금이 실제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만 가지고는 과연 유가환급금 정책에 의한 결과인지 아니면 단순히 유가환급금을 수령한 집단에 속하는 가구들의 소비성향을 반영하는 것인지 판별할 수 없다. 따라서 이어지는 제Ⅳ장에서는 전술한 이중차분 추정법을 사용하여 유가환급금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정책효과에 대한 추정을 시도한다.

〈표 Ⅲ-6〉 유가환급금의 주된 소비지출 항목

(단위: 명, %)

주거비	교통비	내구재 구입비	식료품비	기타	합계
358 (22.5)	148 (9.3)	84 (5.3)	741 (46.6)	260 (16.3)	1,591 (100)

- 주: 1. () 안은 비율을 의미
 2. 주거비: 주거비, 월세비, 주택설비수선재료구입비, 광열수도비, 전기료, 연료비, 공동주택비
 3. 교통비: 공공교통비, 렌트비, 차량 유지를 위해 지출한 연료비·수리비, 부품 구입비, 엔진오일 교환비, 자동차보험료, 자가용 구입비(월할부금 포함)
 4. 내구재 구입비: 냉장고/가구 구입비, 주방용품/가정용기기 구입비
 5. 식료품비: 주식비, 부식비(직장/학교 급식비), 외식비(음식점 지불비용, 주문음식비용), 주류비, 건강보조식품
 6. 기타: 경조사 부조금/기부금, 귀금속 구입비, 미용비, 목욕료, 화장지 구입비, 교재비, 공공기관 관련 수수료, 사회/종교단체 지원금

44) 설문 지면에 먼저 주요 소비항목으로 주거비, 교통비, 식료품비,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도 세부항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첨가하여 응답자가 응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종합부동산세 환급 분석에 사용된 자료

[그림 Ⅲ-2]에 나와 있듯이 재정패널 2차년도 가구용 조사항목에서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관련 사항을 조사하였다. 먼저 2008년 말을 기준으로 가구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험이 있었는지 묻고 “그렇다”라고 대답한 경우 2008년 한 해 동안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을 지급 받은 가구가 있었는지 조사하였다. 다음 질문에서는 지급받은 가구가 누구이고 2008년 한 해 동안 받은 금액은 모두 얼마이며 받은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주된 사용 용도 및 소비지출 항목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급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지 자세하게 물어보았다. 이러한 질문 구조는 유가환급금 관련 조사와 비슷하게 설계되어 있다.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가구 중에 2008년 중에 환급을 받은 가구는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의 위헌 결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을 받은 가구는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2006년과 2007년에 신고납부한 사람들로서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하여 그 차액을 환급받은 경우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는 후 2008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인 12월 15일 이전에 환급금을 지급받은 가구이다. 혹시라도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고 있는 주택분 부과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환급을 받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중 환급을 받았다고 잘못 기억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설문지에 2008년 중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은 ‘세대별 합산과세’가 ‘인별 합산과세’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서 기존 납부자가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환급받은 차액을 의미한다는 설명을 첨가하였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환급에 대한 응답에는 이러한 측정오류(measurement error)가 없다고 가정하였다.

유가환급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동일한 가구를 반복하여 추적 조사하는 패널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 1·2차 조사에 모두

III. 유가환급금·종합부동산세 환급 제도 및 현황 69

포함된 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재정패널에서는 2차년도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원가구의 이탈이 발생한 경우 그 가구를 대체하는 대체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대체된 가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을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가구가 26가구 포함되었으나 이들은 1차년도 조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패널 분석을 위한 분석과정에서 제외하였다.

아래의 <표 III-7>은 1·2차 조사에 모두 포함된 가구 중에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을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지급받은 가구원의 인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평균연령이 55.6세 정도이고 교육 연수는 평균 14.3년에 이르러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만큼의 자산을 보유한 계층의 인적 특성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을 수령한 가구원의 환급금은 평균 201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환급 실적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평균 환급액을 보여주는 표본이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받은 전체 집단을 대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을 수령한 가구원 중에 가구주의 비율은 80%에 약간 못 미치고 있으며 여성의 비율이 21.4% 정도를 차지하였다. 총 84명의 환급금 수령자 가운데 남성 가구주의 비율이 75%에 달했는데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부동산 소유 명의자에게 지급되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부동산 명의자가 남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근로소득자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유가 환급금 수령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낮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이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은퇴자의 비율이 17% 정도 되는 것으로 미루어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의 크기를 고려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납세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Ⅲ-7〉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지급 현황

(단위: 만원)

	평균	표준편차
연령(세)	55.58	11.93
교육 연수(년)	14.31	3.54
가구주 비율(%)	79.76	-
여성 비율(%)	21.43	-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¹⁾	201.61	303.30
2007 임금근로자 비율(%) ²⁾	33.73	-
2007 자영업자 비율(%) ²⁾	30.12	-
2007 은퇴자 비율(%) ²⁾	16.87	-
표본수(N)	84	-

주: 1) 9명의 결측값을 제외한 75명에 대한 결과임.

2) 2007 종사상 지위 비율은 1명의 결측값을 제외한 83명만을 대상으로 산정
자료: 재정패널 2차년도

아래의 〈표 Ⅲ-8〉은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수령자들이 밝힌 환급금 지급절차에 대한 만족도 기초통계를 보여준다. 지급절차에 대하여 5점 만점 척도로 평균 3.86을 부여해서 수령자들은 지급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있는 이후 한 달 이내에 환급금 지급을 완료한 국세청의 노력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표 III-8〉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지급절차에 대한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지급절차	3.86	0.79
N	84	-

주: 원자료에서는 매우 만족에 5, 매우 불만족에 1점을 부여하였으나 해석의 편의를 위해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변수를 조정하였다.
 자료: 재정패널 2차년도

다음의 〈표 III-9〉는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주된 사용 용도에 대한 질문의 응답 결과를 보여준다. 73%의 응답자가 소비지출에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저축을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과 카드빚을 포함한 가계부채 상황에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0%와 8% 정도 되었다.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수령 가구의 입장에서 볼 때 갑작스럽게 생긴 소득의 사용 용도로 70% 이상 소비지출에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유가환급금의 경우 지급이 시작된 11월보다 5개월 앞선 시점인 2008년 6월 8일에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시안이 발표되어 실제로 11월 이후 수령한 가구에서도 이미 수령이 예상되었던 환급금이였다. 따라서 수령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사용 용도를 계획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와 반면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경우 환급이 결정된 이후 한 달 이내에 환급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전 계획을 세울 여지가 별로 없었다.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수령가구가 고가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유동성 제약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구의 비율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표 III-9〉의 결과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 재정패널에서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주된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질문하였기 때문에 소비지출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환급금 100%를 소비지출에 사용하였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중 일부는 저축을 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표 III-7〉에서 보인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가운데 은퇴 가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고가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현재의 소득흐름은 그리 좋지 않은 사람들의 소비를 유도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환급금의 수급시점이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미국발 전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된 직후였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공헌하였는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표 Ⅲ-9〉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주된 사용 용도

(단위: 명, %)

소비지출	저축	가계부채 상환	기타	합계
61 (72.6)	8 (9.5)	7 (8.3)	8 (9.5)	84 (100)

주: () 안은 비율을 의미

자료: 재정패널 2차년도

〈표 Ⅲ-10〉은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주된 사용 용도가 소비지출이라고 응답한 61명에게 주된 소비지출항목은 무엇인지 질문한 내용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⁴⁵⁾. 주로 주거비 지출에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54%로 가장 많았고 식료품비(25%), 기타(18%), 내구재 구입비(3%)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표본의 숫자가 충분히 크지 않아 이러한 결과만 가지고는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실제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주거비에 사용하였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사실은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어지는 제Ⅳ장에서는 이중차분 추정법을 사용하여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정책효

45) 앞의 각주 44와 동일

과에 대한 추정을 시도한다.

〈표 Ⅲ-10〉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주된 소비지출 항목

(단위: 명, %)

주거비	내구재 구입비	식료품비	기타	합계
33 (54.1)	2 (3.28)	15 (24.59)	11 (18.03)	61 (100)

- 주: 1. () 안은 비율을 의미
 2. 주거비: 주거비, 월세비, 주택설비수선 재료구입비, 광열수도비, 전기료, 연료비, 공동주택비
 3. 내구재 구입비: 냉장고/가구 구입비, 주방용품/가정용기기 구입비
 4. 식료품비: 주식비, 부식비(직장/학교 급식비), 외식비(음식점 지불비용, 주문음식비용), 주류비, 건강보조식품
 5. 기타: 경조사 부조금/기부금, 귀금속 구입비, 미용비, 목욕료, 화장지 구입비, 교재비, 공공기관 관련 수수료, 사회/종교 단체 지원금

4. 소득계층별 유가환급금·종합부동산세 환급금 분포 특성

본절에서는 재정패널 2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총소득계층별 소득, 소비지출, 소득세 및 유가환급금·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분포와 소득과의 상관관계, 분배 및 재분배 효과를 살펴본다.

가. 소득·소비지출·소득세 부담·환급금 분포

〈표 Ⅲ-11〉~〈표 Ⅲ-13〉은 (총)소득, 소비지출, 근로·사업소득세 및 두 가지 환급금에 대한 분포와 소득계층별 점유비중과 총소득 대비 비중 추정치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재정패널 2차년도(2008년) 기준의 5,037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

소득⁴⁶⁾은 3,49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이 최저인 경우는 연소득으로 0원, 최고소득은 6억 2천만원에 이른다.

가구당 평균 소비지출은 2,094만원이다. 소비지출 최저가구는 연간 60만원, 최고지출가구는 1억 5,18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비지출의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0.599로 추정된다. 1~2분위의 경우에는 평균소비성향이 각각 1.40과 1.19로 1보다 크다. 이들 계층은 평균적으로 소득수준보다 소비지출이 더 큰 적자가구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이들 계층은 상당수의 가구가 유동성 제약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3~10분위의 경우에는 평균소비성향이 0.818에서 0.417로 1보다 작으며,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대체로 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구조를 시현하고 있다(〈표 III-11〉참조).

상대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지니계수 등의 각종 소득불평등도와 10분위 계수 등이 있다. 먼저 최상위 10%의 소득비중을 최하위 10%의 비중으로 나눈 10분위 계수의 경우 총소득은 16.3배인데 소비지출은 4.8배이다. 소득에 비해 소비지출의 상대비가 작다. 경상소득은 windfall gain 또는 windfall loss 등에 따라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는 시계열적 소득 이동성(income mobility)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일부 항상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반면에 소비지출은 경상소득보다는 항상소득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시적 변화에 기인하는 경상소득의 변화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소비지출의 10분위 계수가

46) 제III장 제4절에서 가구 총소득은 가구소득에 대한 설문결과와 각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 중 큰 값을 선택하였다. 재정패널자료에서는 가구소득을 구간으로 제시하여 피조사자에게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에 가구소득은 해당 구간의 중앙값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중앙값으로의 소득보고에 의한 오차를 감안하여 개인소득의 합이 더 큰 경우에는 그것을 가구소득으로 삼은 것이다.

소득 10분위 계수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런 특성에 기반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표 Ⅲ-12〉 참조).

재정패널자료에는 소득이 양(+)의 값을 가지는 가구원별 소득세 정보를 이용하여 가구별 소득세 부담을 산출하였다. 가구당 평균 근로소득세 부담은 34만원,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의 경우에는 6만 4천원, 도합 40만 4천원으로 추정되었다. 소득계층별 근로소득세 부담은, 1분위의 경우 0원, 2분위는 2천원이며,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세부담이 증가하여 10분위는 202만 7천원에 이른다⁴⁷⁾.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세부담이 대체로 증가하지만 군데군데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Ⅲ-11〉 참조).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1분위의 세부담이 0원이기 때문에 10분위 배율은 무한대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75.6이다. 근로소득세는 1분위의 세부담이 0원인 반면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1분위의 세부담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은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근로소득세에 비해 현저하게 작아 면세점이 훨씬 낮기 때문이다(〈표 Ⅲ-12〉 참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자산 또는 부동산자산 가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2008년에 단행되었던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은 주택자산 또는 부동산자산의 분포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 소득계층별 주택자산 및 부동산자산의 결합분포를 보여주었던 성명재·김현숙(200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득과 자산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그 절대값은 상당히 낮다. 또한 소득계층별 자산분포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상당히 불규칙하게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다. 소득계층별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액 평균치를 비교해보면

47)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가구당 평균 부담이 각각 30만 6천원과 5만 8천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은 것은 세금이 지나치게 과소보고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낳는다.

들쭉날쭉함을 알 수 있다. 소득계층별로는 최고소득층인 10분위가 가구당 환급액 평균이 14만 6천원에 이를 정도로 최고수준을 나타냈지만, 들쭉날쭉한 가운데 군데군데 지역적 정점(local maxima)이 관찰된다. 예를 들면 2분위가 주변의 소득분위보다 환급액 규모가 더 크다. 2분위의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평균이 3~7분위보다 높은 것은, 자산은 상당한 정도 축적하고 있으나 소득수준이 낮은 은퇴자산가가 2분위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유가환급금의 경우에는 명칭으로 보면 기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는 듯한 의미를 시사하지만, 실제의 환급은 유류 관련 소비세의 부담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이루어졌다. 본장의 제1절에서 보았듯이 환급조건은 노동 공급 여부 및 소득수준의 크기에 의존한다. 소득수준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계층별 유가환급금의 분포는 저소득층에서 중소득층으로 갈수록 환급금 평균이 증가하지만 6분위에서 정점을 이룬 다음 7분위부터는 환급액 평균이 감소하는 구조를 보인다. 절대규모 측면에서 볼 때 중소득층이 유가환급금의 최대 수혜계층이다. 저소득층에서 수혜규모가 작은 이유는 노동공급 여부가 환급대상의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즉, 저소득층일수록 무직자 비율이 더 높다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고소득층일수록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가환급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표 III-11〉 참조).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10분위 배수는 82.3배, 유가환급금은 3.3배로 양자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두 가지 환급금의 주된 수혜대상이 서로 상이함을 시사한다(〈표 III-12〉 참조).

III. 유가환급금·종합부동산세 환급 제도 및 현황 77

〈표 III-11〉 소득계층별 소득·소비지출·종합부동산세 환급금·
유가환급금의 분포(2차 재정패널자료 5,037가구 기준)

(단위: 천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평균	6,000	8,503	17,271	19,740	28,458	31,447	39,874	49,826	62,432	97,635	34,977
	상한	6,000	10,800	18,000	21,110	30,000	32,640	42,000	54,000	68,000	620,000	620,000
	하한	6,000	6,040	10,830	18,030	21,120	30,010	32,690	42,010	54,090	68,310	6,000
	Std	0	1,452	2,073	798	3,067	781	3,460	4,722	4,742	40,393	29,336
소비 지출	평균	8,416	10,144	13,167	16,142	19,148	22,126	24,385	28,011	34,363	40,685	20,935
	상한	60,000	68,400	60,000	56,160	62,760	90,000	88,800	90,000	96,000	151,800	151,800
	하한	600	2,040	2,880	3,600	1,800	7,200	4,800	7,200	6,000	6,000	600
	Std	8,640	7,082	6,418	7,994	7,764	10,881	9,588	10,319	13,214	19,661	14,325
근로 소득세	평균	0	2	12	20	65	81	197	423	786	2,027	340
	상한	0	700	670	1,200	3,000	850	4,000	6,000	10,000	61,080	61,080
	하한	0	0	0	-20	-70	0	0	0	-40	-60	-70
	Std	0	36	64	114	206	162	457	719	1,243	3,736	1,394
종합 소득세	평균	3	8	10	36	36	22	105	101	66	241	64
	상한	700	480	2,500	1,050	5,000	1,250	20,400	12,700	5,000	13,000	20,400
	하한	0	0	0	0	0	0	0	0	0	0	0
	Std	41	46	112	164	335	136	868	855	301	1,089	571
소득세 (근로+ 종합)	평균	3	10	22	56	102	104	303	525	852	2,268	404
	상한	700	700	2,500	1,200	5,000	1,250	20,400	12,700	10,000	61,080	61,080
	하한	0	0	0	-20	-70	0	0	0	-40	-60	-70
	Std	41	58	128	196	387	203	964	1,081	1,239	3,792	1,499
종합부 동산세 환급금	평균	2	13	1	1	4	5	11	28	34	146	23
	상한	730	6,000	500	670	3,000	500	3,000	14,000	6,000	20,000	20,000
	하한	0	0	0	0	0	0	0	0	0	0	0
	Std	36	249	21	23	93	45	126	541	352	1,098	410
유가 환급금	평균	18	41	71	76	117	132	115	92	115	60	82
	상한	480	480	480	480	480	480	720	720	720	720	720
	하한	0	0	0	0	0	0	0	0	0	0	0
	Std	64	87	108	114	130	128	143	149	172	124	128

〈표 III-12〉 10분위/1분위의 상대비(2차 재정패널자료 5,037가구 기준)
(단위: 배)

	10분위/1분위 상대비
소득	16.3
소비지출	4.8
근로소득세	-
종합소득세	75.6
소득세	711.0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82.3
유가환급금	3.3

소득과 소비지출의 소득계층별 점유비중 분포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득의 경우 상위 20%의 소득 점유비중은 45.7%, 하위 40%의 소득 점유비중은 14.6%로 3.1배, 소비지출은 각각 35.8%와 22.8%로 1.6배이다.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도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점유비가 크게 증가한다. 상위 20%의 점유비는 82.7%로 하위 40%의 1.1%의 75.2배에 이른다. 소득의 상대비보다도 그 격차가 훨씬 크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각각의 비율이 48.2%와 9.0%로 상대비가 5.4에 이르러 역시 소득점유비의 상대비보다 훨씬 크다. 이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모두 누진과세체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III. 유가환급금·종합부동산세 환급 제도 및 현황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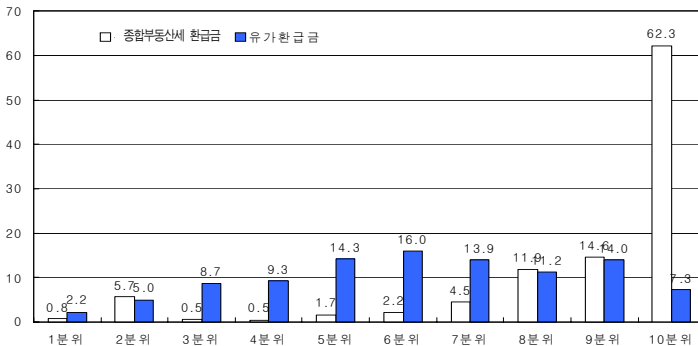
〈표 III-13〉 소득계층별 소득·소비지출·종합부동산세 환급금·
유가환급금의 비중 및 소득 대비 상대비중
(2차 재정패널자료 5,037가구 기준)

(단위: %)

비중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1.7	2.4	4.9	5.6	8.1	9.0	11.4	14.2	17.8	27.9	100
소비지출	4.0	4.8	6.3	7.7	9.1	10.6	11.6	13.4	16.4	19.4	100
근로소득세	0.0	0.1	0.4	0.6	1.9	2.4	5.8	12.4	23.1	59.6	100
종합소득세	0.5	1.2	1.6	5.7	5.7	3.5	16.5	15.9	10.4	37.8	100
소득세	0.1	0.2	0.5	1.4	2.5	2.6	7.5	13.0	21.1	56.2	100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0.8	5.7	0.5	0.5	1.7	2.2	4.5	11.9	14.6	62.3	100
유가환급금	2.2	5.0	8.7	9.3	14.3	16.0	13.9	11.2	14.0	7.3	100
소득 대비 비중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소득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소비지출	140.3	119.3	76.2	81.8	67.3	70.4	61.2	56.2	55.0	41.7	59.9
근로소득세	0.0	0.0	0.1	0.1	0.2	0.3	0.5	0.8	1.3	2.1	1.0
종합소득세	0.1	0.1	0.1	0.2	0.1	0.1	0.3	0.2	0.1	0.2	0.2
소득세	0.1	0.1	0.1	0.3	0.4	0.3	0.8	1.1	1.4	2.3	1.2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0.0	0.2	0.0	0.0	0.0	0.0	0.0	0.1	0.1	0.1	0.1
유가환급금	0.3	0.5	0.4	0.4	0.4	0.4	0.3	0.2	0.2	0.1	0.2

[그림 III-4] 소득계층별 종합부동산세 환급금과 유가환급금의
비중(2차 재정패널자료 5,037가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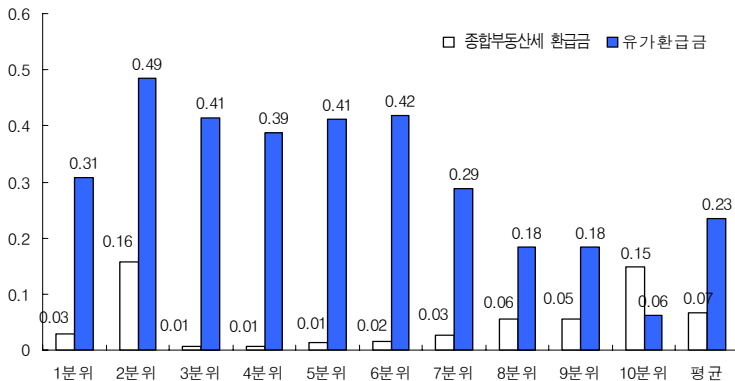
(단위: %)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경우에는 9~10분위가 전체의 76.9%를 차지할 정도로 환급금의 집중도가 높다. 유가환급금의 경우에는 4~9분위에 걸쳐 각 분위의 환급금 비중이 약 10%대 또는 그 이상으로 광범위하며, 나머지 분위의 경우에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표 Ⅲ-13〉과 [그림 Ⅲ-3] 참조). 그러나 소득 대비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비율은, 저소득층의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구조가 누진적임을 의미한다. 이는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다음 항에서 각종 소득 기준의 지니계수 추정치를 비교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유가환급금의 경우에는 대체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 대비 환급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인 환급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유가환급금을 통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서 상대소득격차를 완화시켜줄 것을 시사한다([그림 Ⅲ-4] 참조).

[그림 Ⅲ-4] 소득계층별 종합부동산세 환급금과 유가환급금의 소득 대비 비율(2차 재정패널자료 5,037가구 기준)

(단위: %)



III. 유가환급금 · 종합부동산세 환급 제도 및 현황 81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가구는 전체가구의 4.8%이다.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을 수혜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2.2%,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가구의 45.6%에 이른다(〈표 III-14〉 참조).

〈표 III-14〉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환급금 수혜가구의 비중(2008년 재정패널자료 기준)

(단위: %)

	납부가구(A)	환급금 수혜가구(B)	B/A
유	4.78	2.18	45.61
무	95.22	97.82	-

유가환급금은 전체 가구 중 33.9%가 수혜하여 수혜비율이 전체의 1/3에 이른다(〈표 III-14〉 참조).

〈표 III-15〉 유가환급금 수혜가구의 비중(2008년 재정패널자료 기준)

(단위: %)

	환급
유	33.86
무	66.14

나. 소득재분배 효과

앞의 가항에서는 소득계층별 소득 및 소비지출 분포,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및 유가환급금의 분포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항에서는 이들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본다.

먼저 소득변수와 여타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자. 소득과 소비지출 사이에는 0.66에 이르는 높은 상관관계수가 존재한다. 근로소득세

와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각각 소득과 0.41와 0.13의 상관계수가 존재한다. 유가환급금과 종합부동산세 환급금과의 상관계수는 각각 0.05과 0.09로 매우 낮아 소득과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표 Ⅲ-16〉 참조).

〈표 Ⅲ-16〉 소득변수와의 상관관계 추정치

	상관관계
소비지출	0.65803
유가환급금	0.04856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0.09439
근로소득세	0.40694
종합소득세	0.13095

2차년도 재정패널자료에 의하면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0.406으로 추정된다. 성명재(2010)의 연구에 따르면 2008년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총소득 기준 지니계수 추정치(0.340)와 통계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 추정치(0.344)를 포함하여 통계청 자료에 의한 것보다 지니계수가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런 모습은 한국노동패널자료에 의한 것에서도 재정패널자료와 다소 유사하게 나타난다. 아마도 가계부 조사방식의 가계조사자료에 비해 대체로 기억에 의존하여 일회성 인터뷰를 통해 전년도 소득정보를 획득하는 조사방법상의 차이로 인해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논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므로 추가적인 논의는 곤란하다.

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차감한 연후의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40266과 0.40583으로 총소득 기준 지니계수(0.40609)에 비해 소

폭 하락하여 정(+)¹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앞의 항에서 보았듯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담액이 매우 낮게 추정되어 소득재분배 효과의 크기는, 세후지니계수의 하락률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0.8%와 0.1%에 불과하여 매우 작다. 성명재(2010)의 연구에서 보듯이 가계조사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2.99%, 2009년 가계조사자료 기준)와 비교해보더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감후 소득 지니계수는 0.40239로 추정되었다. 여기에 유가환급금 또는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을 차감한 소득의 지니계수는 각각 0.40176와 0.40259로 추정된다. 유가환급금의 경우에는 지니계수가 소폭 하락(0.16%)하여 미미하나마 소폭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시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경우에는 지니계수를 0.00020지니p 상승시켜 작으나마 소득분배격차를 확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쉽게도 재정패널자료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 환급액 분포를 놓고 미루어 짐작해보면, 종합소득세 부담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절대세부담액뿐만 아니라 소득 대비 비율 또한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누진적인 분포를 지니므로써 정(+)¹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만 환급가구의 비율이 종합부동산세 부담 가구 전체의 약 절반에 달할 정도로 비율이 높으며, 종합부동산세 환급에 따른 부(-)¹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절대크기가 별로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를 통한 정(+)¹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절대크기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17〉 각종 소득의 지니계수 추정치

	상관관계
총소득	0.40609
총소득 - 근로소득세	0.40266
총소득 - 사업소득세	0.40583
총소득 - 근로·소득세	0.40239
총소득 - 근로·소득세 + 유가환급금	0.40176
총소득 - 근로·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0.40259
총소득 - 근로·소득세 + 유가환급금 +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0.40195

다. 가계조사자료와의 소득분포 비교

부록 II의 〈부표 1〉에서는 2009년도 통계청 가계조사자료(전국단위, 1인 가구 포함 기준)를 이용하여 시장소득 단계에서 가처분소득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종 소득 및 소득구성(차감 및 합산항목 포함) 각각에 대한 소득계층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가계조사자료에 의하면 가구당 평균 총소득은 3,962만원으로 재정패널자료의 3,497.7만원보다 약 500만원 가까이 많아 양자간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2008년도 재정패널자료와 1년의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가계조사자료의 경우 총소득 대비 소득세(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실효세 부담률이 3.29%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 반면, 재정패널자료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1.2%에 불과하다. 이는 소득세 부담에 대한 정보에 있어 재정패널자료가 실제보다 과소하게 보고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다만 가계조사자료의 경우에도 소득세 실효세부담률은 보고된 통계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추정(imputation)한 수치인만큼 양

Ⅲ. 유가환급금·종합부동산세 환급 제도 및 현황 85

자간의 직접적인 비교가 적절치 않지만, 그와 같은 방법론상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재정패널자료에 나타난 보고소득과 보고소득세 부담의 크기는 실제보다 과소하게 보고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에 확증할 수는 없지만, 납부세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설문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재정패널 조사로 인해 혹시라도 세무조사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 등이 조사 시에 반영된 반면에, 환급금 등과 같이 수혜의 경우에는 그러한 우려의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조사자료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앞장에서 보았듯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부담 분포와 실효세부담률 수준이 실제보다 현저하게 낮게 추정되었을 것으로 의구심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환급금과 유가환급금의 경우에는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IV. 유가환급금제도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효과 분석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정책은 유가 급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유가 부담 완화 및 불합리한 조세부담 환급을 통한 조세정의의 구현이 표면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 이면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파급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하나로서 소비 진작 효과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도 일면 정책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장은 조세 환급에 따른 정책효과를 평가하고 파급효과 분석을 주된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런 분석은 향후에 유사한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비 진작 정책의 정책효과를 미리 검정해본다는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그 의미가 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환급대상·형태 등의 차이가 소비지출에 미친 효과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효과성)을 검증한다.

유가환급금은 저소득층이 주된 환급대상인 반면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경우에는 고자산가 중 일부가 주된 환급대상이다. 유가환급금은 환급대상을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중·저소득층이 주된 환급대상이다. 이들은 높은 소비성향 또는 부채로 인한 유동성 제약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자들이 기본적으로 (자산 6억원 이상의) 고자산층이므로 환급대상자 역시 이들 중 일부인 고자산 계층이다. 상관관계가 높지는 않지만 소득과 자산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후자의 경우에는 중·고소득층이 주된 정책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IV. 유가환급금제도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효과 분석 87

가지 환급정책은 고소득·고자산계층 또는 저소득·저자산계층과 같은 특성 차이에 의한 환급금 처분 특성상 계층 간 행태 변화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비슷한 시기에 각기 상이한 계층을 대상으로 조세 환급이 나타남으로써 경기변동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일정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소득계층별로 각각의 환급정책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지를 비교함으로써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 측면에서의 정책 유효성을 검토해 본다.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그 결과를 예상해보면, 예산제약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고소득층에서는 소비 진작 효과가 별로 없거나 작을 것인 반면, 예산제약이 상대적으로 팽팽한 저소득층에서는 소비지출 증가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계의 부채가 많으므로 부채상환 효과가 컸고, 일본은 쿠폰 지급시 소비 진작 효과가 작았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효과를 나타내었는지를 주요 외국 사례와 비교해보는 것 또한 관심사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환급의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 진작효과 등에 대한 실증분석이 가능해짐으로써 경제위기 등의 경우에 사용되는 소비 진작 정책 등의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진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향후의 정책시사점을 찾는다면, 예를 들어, 소득세 감세시 공제 확대·세율 인하 또는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 중 어떤 정책수단의 효과성이 클 것인지 등에 대한 증거 제시가 가능하다. 분석의 한계로는 환급대상자 표본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특히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효과 추정시) 추정과정에서 표본 오차(sampling error)로 인한 추정계수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정책의 효과가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이 크게 추정되어 검정력이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개별소비세 할인 등 가격정책을 통한 효과는 분석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정책에서 또한 주목할 사실은 유가환급금은 일회성 환급정책으로 항상소득 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시소득 형태의 windfall gain이 소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반면에, 종합부동산세 환급은 일종의 항구적 세금 감면의 특성을 지니는 만큼 항상소득의 변동으로 인한 소비지출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유가환급금은 일회성 환급인 반면 종합부동산세 환급은 영구적 환급이므로 환급대상자의 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일시적·항구적 개편의 효과 차이도 존재한다. 개별 납세자들이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를 얼마나 제대로 잘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또 다른 과제이다. 그러나 두 환급금 사이에 공통분모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항구적 개편의 차이 효과에 대한 분석은 곤란하다. 다시 말하자면 소득효과와 일시성·항구성의 차이에 의한 효과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효과성 측면에서 항구적 감면과 일시적 감면의 효과를 구분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곤란하다.

1. 분석방법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 국가와 가계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에 대한 부담과 복지 수혜자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2007년부터 재정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특히 재정패널 2차년도(2008년) 데이터에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재정패널 데이터의 패널 특성을 적극 활용하면 각 가구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을 고려한 분석을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엄밀한 분석을 할 수 있다.

유가환급금은 근로자의 경우 2007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의 경우 20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근로소득 혹은 종합소득이 기준금액을 넘는 개인은 유가환급금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기준

에 따라 환급 혜택을 적용받은 집단과 적용받지 않은 집단이 발생되었다. 종합부동산세 환급은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과세 위헌 결정에 따라 환급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위헌판결 이전에도 주택의 명목이 가구원 중 한명으로만 되어 있었던 가구는 위헌 판결 후에도 세액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영향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이 발생하였고 종합부동산세 환급은 영향을 받은 그룹에게만 적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계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i) 각 제도의 영향을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존재하고, ii) 각 그룹에 속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이 어느 그룹에 속하게 되는지 외생적으로 결정되었으며, iii) 재정패널 데이터가 각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7년과 시행 후인 2008년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이중차분추정기법(Difference in Differences)을 사용하였다. 이중차분기법은 패널 자료 분석에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는 분석기법이다.

본절에서는 이중차분추정기법(Difference in Differences)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각각 가계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된 추정식을 소개한다. 또한 각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대상의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한다.

가. 이중차분(Difference in Differences)기법

이중차분(Difference in Difference)기법은 패널자료 분석에서 시기의 차이와 집단의 차이를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는 분석기법이다. 이중차분기법은 새로운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은 집단을 통제집단(controlled group)으로 정의하고,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집단을 실험집단 혹은 처리집단

(treated group)으로 정의한 후, 통제집단과 처리집단의 정책시행 전후의 행태의 변화, 예를 들어 개인의 노동공급 변화 혹은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를 비교하여, 새롭게 시행된 정책이 분석하고자 하는 행태에 미치는 순효과(treatment effect)를 측정해 내는 기법이다.

준실험(quasi-experiment)에 가까운 정책 변화상의 에피소드를 찾아내어 이중차분기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사용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고 실증분석 과정도 쉽다는 장점이 있다. 차분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가계소비지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유가환급금,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이외 변수들의 효과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로 인해서 정책 시행에 따른 이질적인 가구들 사이의 상이한 효과를 파악하는 경우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에 용이하다(Meyer, 1995; Rosenzweig and Wolpin, 2000).

이중차분기법은 그러나 준실험의 계기가 되는 에피소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작업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무작위성(randomness)이 저해되기 때문에 정책효과의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유가환급금의 경우 개인의 입장에서는 정책발표 시점에 외생적으로 주어진 작년도 총급여 혹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수혜대상 여부가 결정되었고, 종합부동산세 환급 지급대상 포함 여부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이므로 무작위성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중차분 추정량은 i) 처리집단의 정책 변화 전후의 차이와 ii) 통제집단의 정책 변화 전후의 차이를 구하고, 두 차이 간의 차이를 구하여 얻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본질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제거하고 정책효과만을 순수하게 추정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중차분 추정량(Difference in Difference Estimator)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구할 수 있다. 먼저 정책 변화 사전·사후에 걸쳐 횡단면자료 혹은 패널자료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⁴⁸⁾. $t_0(t = 0)$ 는

정책 변화가 있기 이전 시점, $t_1 (t = 1)$ 은 정책 변화 이후 시점을 각각 의미한다. 분석을 위해 y_{it} 를 가구 i 의 t 시점에서의 소비지출이라고 정의하고 다음의 식 (1)과 같은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y_{it} = \alpha + \beta X_i + \gamma T_i + \delta X_i \cdot T_i + u_{it} \quad (1)$$

위의 식 (1)에서 X_i 는 가구 i 가 처리집단에 속하면 1, 통제집단에 속하면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이고, T_i 는 정책 변화 이전에는 0, 이후에는 1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이다. u_{it} 는 순수 오차항으로 정의한다. 식 (1)의 파라미터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α = 절편

β = 처리집단 고유의 고정효과(처리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본질적인 차이)

γ =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적용되는 시간효과(거시경제 충격)

δ = 순수 처리효과(treatment effect)

위의 식 (1)을 회귀분석하여 얻게 되는 $\hat{\delta}$ 이 처리효과(treatment effect)에 대한 이중차분 추정량이 된다. $\hat{\delta}$ 이 이중차분 추정량이 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u_{it}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E[u_{it} | X_{it}, T_i] = 0$. 이 가정은 정책효과, 고정효과, 시간효과를 통제 한 후에는 가구소비지출에 영향을 주는 기타 확률적 요인의 효과가 통제된 요인과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면 식 (1)에 있는 X_i 에 0과 1을 대입하고 T_i 에 0과 1을 대입하

48) 정책 변화 이전·이후 시점에 동일한 가구(개인)를 관측하고 있다면 패널자료이고, 시점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달라지면 반복 횡단면자료 (Repeated Cross Section)이다.

여 각각의 경우의 기대값을 구할 수 있다. 아래의 식에서 y 값의 위첨자는 처리집단·통제집단을 나타내는 X 를, 아래첨자는 정책 변화 전후 시점을 나타내는 T 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y_0^1 는 처리집단에 속하는 가구의 정책변화 이전 시점의 소비지출을 나타낸다.

$$E[y_0^1] = \alpha + \beta \quad (2)$$

$$E[y_1^1] = \alpha + \beta + \gamma + \delta$$

$$E[y_0^0] = \alpha$$

$$E[y_1^0] = \alpha + \gam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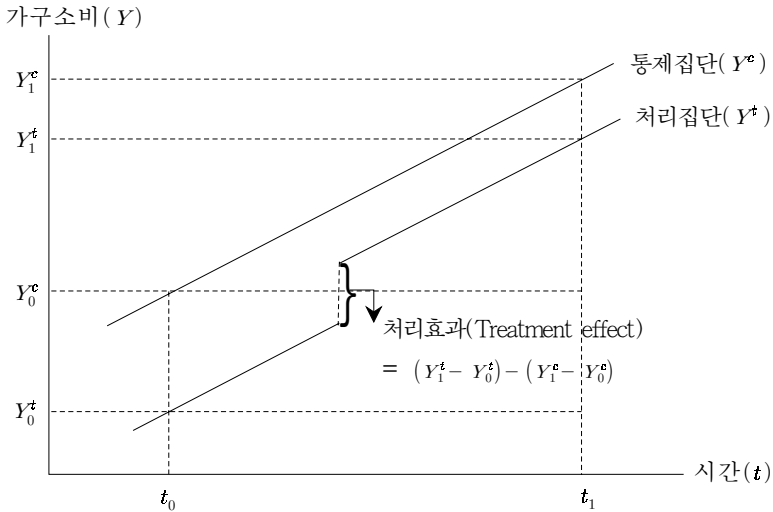
이중차분 추정량은 정의에 따라 $\hat{\delta}_{DD} = (\bar{y}_1^1 - \bar{y}_0^1) - (\bar{y}_1^0 - \bar{y}_0^0)$ 로 나타낼 수 있다. 위의 식 (2)의 기대값에 표본평균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식 (3)과 같다.

$$\begin{aligned} \hat{\delta}_{DD} &= (\bar{y}_1^1 - \bar{y}_0^1) - (\bar{y}_1^0 - \bar{y}_0^0) \quad (3) \\ &= [(\alpha + \beta + \gamma + \delta) - (\alpha + \beta)] - [(\alpha + \gamma) - \alpha] \\ &= (\gamma + \delta) - \gamma \\ &= \delta \end{aligned}$$

즉, 식 (1)을 회귀분석하여 X 변수와 T 변수의 교차항인 $X \cdot T$ 변수의 계수를 추정하면 이것이 바로 이중차분 추정량($\hat{\delta}_{DD}$)이 된다. [그림 IV-1]은 이러한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이중차분 추정기법은 다음의 세 단계를 적용하여 순수한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i*) 만일 정책이 없었다면(counterfactual situation) 처리집단의 t_1 시점에서 소비지출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추정하기 위해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의 시점 간 소비지출 변화분을 구한다. *ii*)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동일한 추세로 소비지출이 변하였다고(그림에서는 증

가하는 추세) 가정한다. *iii*) 처리집단의 시점 간 소비지출 변화 총량과 통제집단의 시점 간 소비지출 변화량의 차이를 구한다.

[그림 IV-1] 이중차분 기법을 적용한 Treatment effect



만일 두 시점 t_0 , t_1 에서 동일한 가구를 관측하는 패널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다음의 식 (4)와 같이 추정함수를 설정하고 일차차분(First Difference)모형을 적용하여 이중차분 추정량(Difference in Difference Estimator)을 구할 수도 있다.

$$y_{it} = \alpha + \delta_1 \text{prog}_{it} + \mu_i + \theta_t + u_{it} \quad (4)$$

위의 식 (4)에서 prog_{it} 는 t_1 시점에 정책의 적용을 받는 가구에게 $1(\text{prog}_{it_1} = 1)$ 값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 값을 부여하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 성격의 변수이고, θ_t 는 t_1 시점에 1, t_0 시점에 0을 갖는 더미변수로서 t_1 시점의 거시경제 충격(macro shock)을

고려하기 위한 연도 더미변수이다. μ_i 는 관측되지 않는 가구의 고정효과(fixed effect)를 의미한다. 식 (4)에 일차차분을 취하면 다음과 같이 식 (5)을 얻게 되는데 일차차분을 통해 μ_i 가 제거된다.

$$\Delta y_{it} = \zeta_t + \Delta_1 \text{prog}_{it} + \Delta u_{it} \quad (5)$$

ζ_t 는 일차차분 모형에서 새롭게 정의된 연도 더미 변수를 의미하는데 두 기간 (t_0, t_1)만 있을 경우에는 상수항이 된다. $E(\Delta u_{it} | \text{prog}_{it}) = 0$ 이 성립한다면 Δy_{it} 를 prog_{it} 로 회귀분석하여 얻게 되는 일치추정량 $\hat{\delta}_1$ 이 정책의 순효과(treatment effect)를 의미하며, 이는 식 (3)에서 구한 이중차분 추정량 ($\hat{\delta}_{DD}$)과 동일해진다⁴⁹⁾.

나. 추정식 및 추정에 사용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정의

본 연구를 위해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i)유가환급금과 ii) 종합부동산세 환급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추정식은 식 (5)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추정을 위해 사용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은 제도의 특성에 맞게 정의하였다. 또한 가구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추가하여 가구 간의 이질성을 통제하였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추정식은 통제변수 Z_{it} 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다.

$$\text{TRIANGLE}y_{it} = \Delta Z_{it}\gamma + \Delta_1 \text{prog}_{it} + \eta + \Delta u_{it} \quad (6)$$

유가환급금은 2007년도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혜택 수혜 여부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2007년도에 해당소득이 있는 가구원을

49) 자세한 증명은 Blundell and MaCurdy(1999)를 참조할 것.

IV. 유가환급금제도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효과 분석 95

한 명 이상 보유하고 있던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소득기준을 만족시키는 가구원이 소속되어 있어서 유가환급금을 수령한 가구를 처리집단으로, 그러한 가구원이 없어서 수령하지 못한 가구를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종합부동산세 환급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먼저 2008년 12월에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부과에 대한 위헌판결의 결과로 세대별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함에 따라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 인별로 부과하였을 경우 재계산된 납부세액 초과분을 환급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제도가 시행되었던 2006년과 2007년에 오직 한 명의 가구원만이 과세대상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였던 가구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2009년 1월에 지급된 종합부동산세 환급은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일률적·무차별적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규정에 대해 내린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하여 취해졌다. 종합부동산세 개정 법령에서는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과세기준 금액과 세율을 조정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합부동산세 납부가가 환급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2008년 12월의 1차환급분에 대해서는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으나 2009년 1월의 2차환급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구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중차분 기법을 적용하기위해서 2006년과 2007년에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로 과세된 시기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재판소 세대별 과세 위헌판결에 따라 2008년에 지급된 1차 환급을 받은 가구를 처리집단으로, 2008년에 환급을 받지 않은 가구를 통제집단으로 정의한다.

이어지는 제2절에서 분석에 사용되는 재정패널 데이터를 자세히 설명하고 유가환급금과 종합부동산세 환급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분석을 실시한다.

2. 분석결과

가. 유가환급금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1) 유가환급금 효과 추정식에 사용된 통제 변수에 대한 기초 통계

〈표 IV-1〉은 유가환급금의 효과 추정에 사용된 주요 통제변수(Z_{it})에 대한 2007년과 2008년의 기초 통계를 요약하고 있다. 이중차분 분석을 위해서 재정패널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에서 모두 관측되는 4,396가구 중 2007년에 근로소득 가구원이 있는 3,696가구만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였다. 이 중에서 1,445가구(처리집단)가 2008년에 유가환급금을 수령하였으며 2,251가구(통제집단)는 수령하지 않아서 39%의 가구가 유가환급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환급금이 전년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표 IV-1〉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가구의 평균 가구소득 수준이 미수급 가구에 비해 10% 이상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가구 자산과 부채의 규모에서도 나타나는데 수급 가구의 순자산(=자산-부채) 규모는 미수급 가구 순자산 규모와 비교해볼 때 평균적으로 70% 수준에 머물렀다. 이밖에도 수급 가구와 미수급 가구 간에는 가구원 수, 자녀 수, 가구주의 연령 및 학력, 여성 가구주 비율 등의 인적 구성에서도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 규모의 차이는 작지만 수급 가구의 가구 규모가 더 크고 자녀 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를 기준으로 볼 때 수급 가구가 상대적으로 젊었는데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가구 소득과 자산규모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의 학력은 수급 가구에서 더 높았으나 여성 가구주의 비율은 오히려 미수급 가구에서 3% 정도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수급 가구에서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미수급 가구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았다.

IV. 유가환급금제도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효과 분석 97

〈표 IV-1〉 유가환급금 이중차분 추정식에 포함된 통제 변수 기초 통계

(단위: 만원, %)

변수	2007		2008	
	수급 가구	미수급 가구	수급 가구	미수급 가구
연간 소득	3,618 (59.44)	4,024 (71.99)	3,511 (58.27)	4,079 (83.87)
자산	18,619 (750.80)	26,052 (972.20)	19,093 (676.30)	26,860 (867.90)
부채	3,045 (158.30)	4,056 (238.40)	3,642 (201.70)	4,848 (252.80)
가구원 수(명)	3.32 (0.03)	3.11 (0.03)	3.40 (0.03)	3.18 (0.03)
5세 이하 자녀수(명)	0.295 (0.016)	0.227 (0.011)	0.278 (0.016)	0.211 (0.011)
가구주 연령(세)	44.22 (0.29)	48.57 (0.27)	45.03 (0.28)	49.52 (0.27)
가구주 교육 연수(년)	12.65 (0.08)	12.14 (0.09)	12.68 (0.08)	12.07 (0.10)
여성 가구주비율(%)	12.2 (0.86)	15.2 (0.76)	11.9 (0.85)	15.3 (0.76)
가구주 임금근로자 비율(%)	63.4 (1.27)	57.9 (1.04)	62.9 (1.27)	55.7 (1.05)
가구주 자영업자 비율(%)	28.9 (1.19)	35.1 (1.01)	29.1 (1.19)	33.9 (1.00)
표본 수(N)	1,445	2,251	1,445	2,251

주: 1. ()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2. 가구주 임금근로자 비율에는 일용근로자 포함.

자료: 재정패널 1차~2차년도

2) 소비지출 항목에 대한 기초 통계: 유가환급금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종속변수(y_{it})인 가구소비지출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재정패널에서는 전년 한 해 동안 가구가 직접 소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한 달 평균금액을 질문한다. 여기에는 부모나 자녀에 대한 용돈, 경조사비, 대출 이자, 정부에 납부하는 사

회보험료 및 세금, 저축, 투자 등 비소비지출은 제외하고 직접 소비한 비용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IV-2>의 첫 번째 열에 있는 월평균 소비지출은 이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표 IV-1>이 보인 것처럼 수급 가구와 비수급 가구 간의 소득·자산·경제활동 및 인적 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소비지출은 두 집단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2008년의 소비지출은 2007년에 비해 10% 이상 상승하였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가구 평균 소비지출은 2007년 221만원, 2008년은 229만원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재정패널에서 보고된 10% 상승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재정패널에서는 먼저 월평균 가구소비출 총액에 대해 질문하고 다음으로 각 소비 항목별로 자세하게 월평균 혹은 연간 소비지출 금액에 대해 묻고 있다. 만일 해당 항목에 지출한 비용이 없으면 0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재정패널 2차년도 설문지에는 1차년도에 비해 설문에 포함된 소비지출 항목의 수가 늘어났다. 예를 들어 2차년도에는 교통비, 가전제품 구입비, 가구 구입비, 의류 및 잡화 구입비 등의 항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응답자가 제일 처음 질문한 월평균 가구소비지출 총액에 대한 응답을 미루고 각각의 소비지출 항목에 대한 응답을 먼저 실시한 후 응답하였거나, 혹은 첫 번째 질문의 응답과 각 항목의 응답결과의 합이 맞지 않아 면접원이 처음 질문에 대하여 다시 응답하도록 유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2007년과 2008년의 차이는 이러한 설문 방식의 변경에 의한 것으로 의심하여 볼 수 있다. 이는 다음의 <표 IV-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IV-2>는 재정패널에서 조사하고 있는 모든 소비지출 항목에 대한 평균과 표준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표 IV-2>에서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금액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2007년의 경우 항목별 소비를 합하면 수급 가구의 경우 173만원, 미수급 가구는 179만원이 된다. 이 값들은 <표 IV-2>의 첫 번째 열에 있는 월평균 소비지출보다 수급 가구는 9만원, 미수급 가구는 5만원 정도 높지만 항목별 소비의

IV. 유가환급금제도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효과 분석 99

합이 총액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가구소비 실태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08년에는 가전제품 구입비, 교통비, 의류 및 잡화구입비, 화장품 및 이·미용비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추가된 항목을 제외하고 2007년, 2008년 모두 질문한 항목만을 합하여 보면 2008년 수급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의 합은 178만원, 미수급 가구의 경우 184만원으로 계산되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증가율 추세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월평균소비지출 금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질문 방식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상승 추세가 유가환급금 수급 가구와 미수급 가구 모두 비슷한 규모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중차분 분석을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각각의 소비지출 항목에 대해서도 재정패널은 세부항목까지 매우 자세하게 질문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주거비 항목의 경우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 요금, 난방용 유류비, 연탄, LPG 등의 한 달 평균 납부 금액을 묻고 있다. 따라서 주거비는 세부항목 응답의 합으로 구해진다. 이러한 경우 하나의 세부항목에서 결측값이 관찰되면 그 가구의 주거비는 결측값을 갖는다. 다른 소비지출 항목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표 IV-2>에 포함된 표본의 수는 소비지출 항목과 연도에 따라 다르다. 또한 지출한 액수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모두 포함하여 평균 금액을 계산하였다.

<표 IV-2>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월평균 주류비와 담배 구입비는 수급 가구에서 다소간 높게 나타났다. 주류비의 경우 수급 가구의 월평균 지출이 미수급 가구의 지출보다 크다는 가설을 5%의 유의수준에서 테스트한 결과 가설을 기각하였으나(P-value: 0.0577) 담배 구입비는 같은 유의 수준에서 기각하지 못하였다(P-value: 0.0002). 소득기준에 따라 수급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은 편임을 감안할 때 주류와 담배 같은 비권장재화(demerit goods)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

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교육비 지출과 여행·스포츠 레저비 지출은 이와 반대로 미수급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교육비와 레저비 지출이 가구소득의 정(+)의 함수임을 보여준다. 또한 통신비는 수급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젊은 연령층에서 통신비 지출이 높은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의 다른 소비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수급 가구와 미수급 가구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IV-2〉 월평균 소비지출 및 각 항목별 지출 통계: 유가환급금

(단위: 만원)

변수	2007		2008	
	수급 가구	미수급 가구	수급 가구	미수급 가구
소비지출	164.0 (2.44)	173.9 (2.68)	197.5 (2.79)	201.4 (2.99)
주거비	21.82 (0.41)	21.67 (0.34)	21.01 (0.32)	21.22 (0.29)
식료품비	41.03 (0.60)	41.85 (0.63)	40.56 (0.56)	41.40 (0.60)
외식비	14.18 (0.36)	14.61 (0.36)	14.44 (0.37)	15.02 (0.39)
주류비	2.77 (0.14)	2.56 (0.15)	2.15 (0.11)	1.95 (0.09)
담배 구입비	3.46 (0.11)	3.18 (0.09)	3.32 (0.12)	2.88 (0.09)
통신비	16.76 (0.25)	14.42 (0.19)	16.26 (0.21)	14.17 (0.18)
문화생활비	5.47 (0.20)	4.99 (0.16)	4.94 (0.16)	4.86 (0.15)
여행·스포츠 레저비	5.95 (0.34)	7.75 (0.37)	4.34 (0.26)	6.00 (0.30)
공교육비	16.53 (0.79)	15.82 (0.63)	20.49 (0.91)	20.83 (0.88)
사교육비	16.07 (0.80)	22.07 (0.89)	16.16 (0.78)	23.08 (0.94)
유류비	18.66 (0.48)	18.24 (0.43)	23.02 (0.70)	22.19 (0.75)
보건의료비	10.44 (0.47)	11.89 (0.47)	11.65 (1.05)	10.79 (0.44)
가전제품 구입비			3.04 (0.18)	2.73 (0.15)
교통비			12.68 (0.33)	11.23 (0.24)
의류 및 잡화구입비			10.72 (0.27)	10.76 (0.27)
화장품 및 이미용비			5.24 (0.11)	4.96 (0.11)

주: 1. () 안은 표준오차

2. 설문에서 연간 지출금액을 묻고 있는 항목은 월평균(=연간/12)으로 전환하였음.

자료: 재정패널 1차~2차년도

3) 유가환급금 이중차분 추정 결과

아래의 <표 IV-3>은 유가환급금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추정 과정에서는 1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기 위해 2007년 명목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2008년 가치로 환산하였다. 추정 모델(1)은 어떠한 통제변수도 고려하지 않은 식 (5)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유가환급금 제도가 월평균 가구소비지출을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환급금 수급 가구 더미변수의 추정계수에 따르면 유가환급금 제도는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을 6만원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추정 모델(2)에서는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통제한 식 (6)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가구소비지출은 예상대로 가구소득과 가구자산 및 가구원 수의 정(+)의 함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주의 연령 및 학력 수준, 그리고 5세 이하의 어린 자녀 유무에 따라 소비지출에 대한 선호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였지만 추정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23만원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또한 유가환급금 수급 가구 더미의 효과와는 상관이 없었다. 이렇듯 통제변수를 추가하였음에도 유가환급금 수급 가구 더미변수의 추정계수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추정 모델(3)에서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소비지출 패턴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가구주 임금근로자 더미변수를 추가하였으나 이 또한 추정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IV-3>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가구 소득과 순자산이 월평균 소비지출에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각각 가구 소득의 제곱변수와 순자산 제곱 변수를 추가하여 추정한 경우에도 유가환급금 수급 가구 더미변수의 추정계수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표 IV-3>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유가환급금 제도가 가구의 소비지

출을 진작시켜 경기부양이라는 정책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IV-3〉 유가환급금이 월평균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추정 결과

설명 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유가환급금 수급 가구 더미	6,431* (3,339)	6,689** (3,360)	6,645** (3,361)
2차년도 더미	19.41*** (2,261)	18.71*** (2,318)	18.71*** (2,317)
월평균 가구소득(백만원)		6,403*** (1,836)	6,384*** (1,835)
가구 순자산(천만원)		19.72*** (5,646)	19.81*** (5,646)
가구원 수		0.338*** (0.108)	0.339*** (0.108)
5세 이하 자녀 유무 더미		2.468 (9.138)	2.53 (9.155)
가구주 연령		0.0107 (0.347)	0.0934 (0.355)
가구주 교육 연수		-0.0118 (0.763)	-0.0407 (0.765)
여성 가구주 더미		-22.51** (8,850)	-22.71*** (8,771)
가구주 임금근로자 더미			5.017 (4,338)
표본수(N)	7,392	6,934	6,934
가구수	3,696	3,467	3,467

주: 1. *** p<0.01, ** p<0.05, * p<0.1

2. () 안은 White 이분산성을 고려한 robust standard error.

이번에는 특히 <표 Ⅲ-6>에서 유가환급금의 주된 소비지출 항목이라고 조사된 식료품비, 주거비, 교통비에 대한 이중차분 추정을 시도하여 보았다. <표 Ⅵ-4>의 식료품비는 <표 Ⅲ-6> 주식의 설명을 참조하여 식료품비와 외식비, 주류비를 합한 금액을 종속변수로 구성하였다. 주거비는 주택관리비와 월세를 더한 금액으로 <표 Ⅵ-4>의 주거비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교통비는 <표 Ⅵ-4>의 유류비와 더불어 <표 Ⅲ-6>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재정패널에 별도의 질문 항목으로 추가하였던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을 구성하여 이용하였다. 교통비의 경우 재정패널 1차년도 조사에서 공공교통비와 개인교통비의 지출 정보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차분 추정식의 종속변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생략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교통비 분석은 승용차 운전자의 유류비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표 Ⅵ-4>는 추정 모델 (3)을 적용한 각각의 지출 항목별 이중차분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식료품비와 주거비의 경우 유가 환급금 수급 가구 더미의 추정 계수가 음의 값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크기도 작아서 유가환급금 수령에 따른 소비의 변화가 있었다고 해석하기 힘들다. 교통비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추정계수의 크기만을 보았을 때 월평균 2만원의 증가 효과가 있었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연간 24만원의 증가로 볼 수 있는데 금액의 크기가 유가환급금의 가구 평균 수령금액과 비슷하게 나타난 점이 흥미롭다. 그러나 추정계수의 신뢰구간이 상당히 넓게 추정되었기 때문에 유가 환급금이 가구의 교통비 지출에 충당되었다는 해석은 곤란하다. 오히려 아래의 분석의 한계점을 고려하였을 때 추정치의 크기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으며 유가환급금이 특정한 세부 항목의 지출 증가를 유도하지는 못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IV-4〉 유가환급금이 지출 항목별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추정 결과

	식료품비	주거비	교통비
유가환급금 수급 가구 더미	-0.187 (1.060)	-0.448 (0.458)	2.064 (2.994)
표본수(N)	6,914	6,720	6,934
가구수	3,457	3,360	3,467

주: 1. *** p<0.01, ** p<0.05, * p<0.1
 2. () 안은 White 이분산성을 고려한 robust standard error.
 3. 추정식에는 2차년도 더미, 월평균 가구 소득, 가구 순자산, 가구원 수, 5세 이하 자녀 유무,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 연수, 여성 가구주 더미, 가구주 임금근로자 더미를 포함하였으나 보고에서는 생략하였음.

4) 유가환급금 분석의 한계

〈표 IV-3〉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유가환급금 제도가 가구의 소비지출을 진작시켜 경기부양이라는 정책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추정계수가 의미하는 효과의 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중차분 분석의 대상이 되는 종속변수(y_{it})는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다. 추정계수가 의미하는 대로 유가환급금 제도가 가구소비지출을 월평균 6만원 증가시켰다면 연간 72만원의 소비지출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가환급금은 한 차례 지급되었으며 개인당 최대환급액은 24만원이었다. 따라서 24만원을 수령해서 72만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유가환급금은 개인단위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한 가구에 두 명 이상의 가구원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표 IV-5〉는 분석에 포함된 표본가구의 유가환급금 수령인원에 대한 분포를 보여주는데 가구 내 1명의 가구원만이 유가환급금을 수령한 가구가 전체 수령가구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 평균 수령인원 수는 1.19명이고

가구 평균 환급금 수령액은 2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유가환급금 수령인원 수에 따른 가구 분포

(단위: 가구, %)

1명	2명	3명	4명	합계
1,194 (82.6)	232 (16.1)	17 (1.2)	2 (0.1)	1,445 (100)

주: () 안은 비율을 의미
자료: 재정패널

이와 더불어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유가환급금이 2008년 11월과 12월에 지급되었다는 점이다. 2008년도 하반기에 지급된 유가환급금이 과연 2008년 전반의 월평균 가구소비지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지 의심해볼 수 있다⁵⁰⁾. 또한 2차(2009)년도 재정패널조사는 2009년 5~8월 기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2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는 2009년의 조사시점에 2008년의 월평균 가구소비지출금액에 대해 응답하였다. 응답과정에서 유가환급금을 수령한 2008년 말 시점의 소비지출에 보다 큰 가중치를 주었을 수도 있고 또는 기억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표 IV-3〉에서 추정한 추정계수를 가지고 유가환급금 제도가 연간 72만원의 소비지출 증가를 유발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⁵¹⁾. 본 연구의 단계에서는 추정계수의 크기보다는 통계적 유의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여 유가환급

50) 유가환급금 정책은 2008년 6월에 시안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환급금 수령을 예상한 가구에서는 발표시점부터 소비지출을 조정하였을 수 있다.

51) 부록에서 환급금액보다 소비지출금액이 더 높을 수 있는 소비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재정패널은 내구재 소비에 대해서 2차년도 조사에서만 설문하였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용한 모형의 검증은 불가능한 한계점이 있었음을 밝힌다.

금제도가 실제로 가구의 소비지출을 진작시켰다는 정성적인 증거로서 추정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나.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1)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효과 추정에 사용된 통제 변수에 대한 기초 통계

〈표 IV-6〉은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효과추정을 위해 사용된 주요 통제변수(Z_{it})에 대한 2007년과 2008년의 기초 통계를 요약하고 있다. 일차차분 모형을 적용한 이중차분 추정량을 구하기 위해 재정패널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에서 모두 관측되는 4,396가구 중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험이 있는 412가구만으로 분석의 대상을 한정하였다. 이 중에서 84가구(처리집단)가 2008년 중에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을 수령하였으며 328가구(통제집단)는 수령하지 않아서 20%의 가구가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을 수령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가구 소득과 가구 자산의 규모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이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난다.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받은 가구의 경우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되었음을 고려하면 한 가구에서 두 명 이상의 부동산 소유 명의자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환급금을 받지 못한 가구는 오직 한 명의 가구원만이 납세의무자였음을 뜻한다. 두 집단 사이에서 가구원 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은 가구에서는 두 부부가 모두 각자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부동산 소유 규모도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과 부채 규모의 추세에서는 오히려 수급 가구에서 순자산 감소의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위기의 여파가 고자산가에게 더 크게 작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통계적인 검정을 시도할 수는 없지만 흥미로운 결과로 보인다.

두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연간 가구소득의 차이는 자산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듯이 2007년의 경우 대부분 비근로소득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근로소득에서의 차이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비근로소득에서의 차이 역시 관찰되고 있다.

가구주의 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연령과 교육 연수를 살펴보면 수급 가구의 가구주의 연령이 3세 정도 높고 교육 연수에서도 1.5년의 차이가 발생하여 가구주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차이가 두 집단 간의 자산 규모의 차이를 어느 정도는 설명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나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에서는 두 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IV-6〉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이중차분 추정식에 포함된 통제 변수 기초 통계

(단위: 만원)

변수	2007		2008	
	수급 가구	미수급 가구	수급 가구	미수급 가구
연간 소득	7,506 (612.1)	5,595 (375.9)	7,471 (546.2)	5,549 (413.4)
근로 소득	5,623 (520.3)	5,036 (369.2)	6,009 (574.2)	4,861 (402.7)
자산	154,683 (11,226)	57,641 (5,326)	143,716 (9,419)	65,142 (4,921)
부채	15,451 (2,973)	8,052 (1,275)	19,373 (2,610)	9,696 (1,350)
가구원 수(명)	3.19 (0.12)	3.39 (0.10)	3.37 (0.13)	3.48 (0.10)
가구주 연령(세)	53.82 (1.24)	50.85 (1.05)	54.76 (1.25)	51.32 (1.04)
가구주 교육 연수(년)	14.85 (0.28)	13.35 (0.34)	14.73 (0.33)	13.20 (0.36)
여성 가구주 비율(%)	4.76 (2.34)	6.56 (2.25)	3.57 (2.04)	6.56 (2.25)
가구주 임금근로자 비율(%)	36.9 (5.30)	44.3 (4.52)	40.5 (5.39)	45.1 (4.52)
가구주 자영업자 비율(%)	35.7 (5.26)	42.6 (4.50)	31.0 (5.07)	41.8 (4.48)
표본 수(N)	84	122	84	122

주: ()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자료: 재정패널 1차~2차년도

2) 소비지출 항목에 대한 기초 통계: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수급 가구와 미수급 가구의 가구소
비지출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표 IV-7〉은 재정패널에서
조사하고 있는 모든 소비지출 항목에 대한 평균과 표준오차를 포함하
고 있는데 유가환급금 분석에서와 같이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명
목금액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가환급금 수급·미수급 가구와는 달리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수급 가구와 미수급 가구 사이에서는 월평균 소비지출 수준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었다. 2007년에는 약 70만원의 차이를 보였고 2008년에는 그 차이가 10만원 이상 더 벌어졌다. 두 집단 간의 가구 소득과 순자산 규모의 차이가 소비지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소비지출 항목에서 환급금 수령가구의 평균 지출금액이 크게 나타났으나 유독 담배 구입비에서는 미수급 가구의 지출액이 더 큰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미수급 가구의 담배 구입비가 더 크다는 가설을 5%의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없었다($P\text{-value}=0.0487$). 절대적인 금액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표 IV-2>에서 유가환급금 수급 가구와 미수급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 비교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수급 가구의 담배 구입비가 더 높았던 점을 생각해보면 담배와 같은 비권장재화의 소비와 가구의 소득 수준과의 관련성이 흥미롭게 여겨진다. 그러나 주류 구입비의 경우에는 수급 가구에서 두 배 이상 높은 지출을 보이고 있어서 소득 수준과 비권장재화의 소비와 관계를 단정적으로 논의할 수 없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더 이상의 논의는 하지 않지만 향후 연구과제로서는 흥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두 집단 사이에서 특별히 지출 규모에서 차이가 나는 항목을 살펴보면 식료품비와 외식비, 여행·스포츠 레저비, 보건 의료비 등을 들 수 있다. 앞의 세 가지 항목은 소득탄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이고 마지막 보건 의료비의 차이는 가구주 연령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비에서 연도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더 이상 가구원 중에 교육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가구의 비율,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이미 정규교육 과정을 마쳐서 교육비 지출 금액이 0인 가구⁵²⁾

52)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수급 가구 중 44%는 교육비 지출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미수급 가구에서는 37%가 교육비 지출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의심되긴 하지만 뚜렷한 설명 원인은 찾을 수 없었다.

〈표 IV-7〉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을 수급한 가구와 미수급한 가구의 전체적인 소비지출 규모와 세부지출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태는 유가환급금 수급 가구와 미수급 가구의 소비지출을 비교했던 〈표 IV-2〉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효과 분석을 위한 처리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서 이질성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월평균 소비지출 및 각 항목별 지출 통계: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단위: 만원)

변수	2007		2008	
	수급 가구	미수급 가구	수급 가구	미수급 가구
소비지출	295.8 (19.42)	226.5 (14.47)	353.3 (21.74)	270.8 (15.26)
주거비	30.31 (1.84)	24.28 (1.56)	30.08 (1.44)	23.53 (1.47)
식료품비	76.07 (5.16)	55.53 (3.48)	70.60 (3.83)	53.41 (3.26)
외식비	29.58 (2.64)	22.13 (2.52)	32.71 (3.45)	21.46 (2.19)
주류비	7.64 (1.54)	4.08 (1.34)	4.08 (0.90)	1.70 (0.24)
담배 구입비	1.86 (0.38)	2.53 (0.36)	1.92 (0.40)	2.49 (0.36)
통신비	18.53 (1.13)	16.54 (0.86)	17.26 (1.01)	16.23 (0.77)
문화생활비	7.67 (0.89)	7.50 (1.13)	8.46 (0.95)	6.37 (0.66)
여행·스포츠 레저비	25.71 (4.21)	14.08 (2.38)	22.64 (3.09)	10.28 (2.02)
공교육비	28.79 (5.93)	20.06 (3.04)	51.16 (10.50)	26.35 (3.50)
사교육비	46.82 (7.93)	28.88 (4.89)	37.82 (6.97)	39.21 (7.10)
유류비	27.62 (2.69)	27.88 (2.64)	32.72 (4.23)	33.20 (3.95)
보건의료비	21.47 (3.62)	12.01 (1.61)	22.49 (4.04)	15.66 (2.32)
가전제품 구입비			6.92 (1.80)	3.84 (0.76)
교통비			15.99 (1.98)	13.09 (1.46)
의류 및 잡화구입비			22.79 (2.10)	15.10 (1.71)
화장품 및 미용비			8.63 (0.66)	6.96 (0.64)

주: 1. () 안은 표준오차

2. 설문에서 연간 지출금액을 묻고 있는 항목은 월평균(=연간/12)으로 전환하였음.

자료: 재정패널 1차~2차년도

3)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이중차분 추정 결과

〈표 IV-8〉은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 방식으로 추정한 추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추정과정에서는 유가환급금 효과 추정에서와 같이 2007년 명목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2008년 가치로 환산하였다. 추정 모델(1)은 어떠한 통제변수도 고려하지 않은 식 (5)의 추정결과를, 추정 모델(2)는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통제한 식 (6)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추정 모델(1)에서 어떠한 통제변수도 고려하지 않은 식 (5)의 추정결과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환급이 월평균 가구소비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모델(2)에서는 통제변수들 중에서 오직 가구원 수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수급 가구 더미변수의 추정계수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에도 별다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추정 모델(2)의 결과는 위의 〈표 IV-3〉에서 유추한 결과와는 다르게 가구소득과 가구 순자산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정 모델(3)에서는 이들 변수들의 비선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보았다. 추정 모델(3)의 추정 결과는 소득과 자산이 소비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을 확인하여 주었다. 소득과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도 늘어났으나 증가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효용함수의 오목성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된다⁵³⁾.

무엇보다도 추정 모델(3)에서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수급 가구 더미변수의 추정계수의 크기가 0에 가까워 졌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

53) 유가환급금이 소비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을 때는 이러한 소득과 소비의 비선형 관계는 발견할 수 없었다.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분석대상의 소득 수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비선형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계적 유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정계수의 크기가 0에 가깝다는 사실은 종합부동산세 환급이 가구의 소비지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석을 진행하기 이전에 예산제약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고소득층에서는 소비 진작 효과가 별로 없거나 작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표 IV-8>은 이러한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고소득층에서는 환급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유가환급금의 10배에 달하는 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소비지출을 증가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⁵⁴⁾.

54)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경우 전반적인 소비지출 증가 효과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세부 소비지출 항목별 이중차분 추정은 시도하지 않았다.

〈표 IV-8〉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월평균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추정 결과

설명 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수급 가구 더미	10.02 (23,270)	10.36 (23,670)	-0.438 (23,480)
2차년도 더미	33.65** (15,320)	23.98 (15,240)	26.29* (14,430)
월평균 가구소득(백만원)		4.304 (6,289)	27.39*** (10,550)
월평균 가구소득 제곱		-	-1.188** (0.465)
가구 순자산(천만원)		0.162 (0.232)	0.694* (0.368)
가구 순자산 제곱		-	-0.0021** (0.001)
가구원 수		65.01** (29,470)	59.03* (32,670)
가구주 연령		2.282 (1,894)	2.288 (1,851)
가구주 교육 연수		3.842 (4,043)	4.221 (4,190)
가구주 임금근로자 더미		45.06 (47,28)	40.89 (42,62)
표본수(N)	412	358	358
가구수	206	179	179

주: 1. *** p<0.01, ** p<0.05, * p<0.1

2. () 안은 White 이분산성을 고려한 robust standard error.

4)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분석의 한계

위의 〈표 IV-8〉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환급은 고소득층 가구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러나 유가환급금과 달리 종합부동산세 환급이 원래부터 가구의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표 IV-8>에 나타난 추정 결과만을 가지고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결론짓기에는 본 분석의 뚜렷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환급이 결정된 시점은 2008년 11월 중순이었으며 가구에서 환급금을 수령한 시점은 11월부터 12월 중순 사이였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구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시기는 불과 한 달 반 정도에 불과하다. 재정패널에서는 가구소비지출에 관한 설문에서 2008년 월평균 지출을 묻는다. 따라서 과연 응답자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08년 말 2개월 동안의 소비지출 영향을 반영하여 월평균 지출 수준을 응답하였을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추정 결과는 실제의 효과를 과소추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을 수령한 가구에서 특히 주거비에 사용하였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으나 <표 IV-7>에서는 수급 가구의 주거비 지출에서 2007년과 2008년에 별 차이가 관찰되지 않은 것은 소비항목 설문 이 지닌 구조의 한계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둘째, 추정에 사용된 표본의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표 IV-8>의 추정 모델(2)에서 대부분의 설명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인지 신뢰 구간이 크게 추정되어 검정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델(3)에서 가구소득의 제곱항과 가구 순자산 제곱항을 추가하였을 때 소득과 자산이 소비에 미치는 유의한 효과를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사실 또한 추정 모델(specification) 선택의 문제인지 표본의 크기 문제인지 확실하지 않다.

셋째, 마지막으로 본 연구 전반에 걸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월평균 소비지출의 측정오류(measurement error) 문제를 들 수 있다. 재정패널 2차년도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2009년 5월~9월⁵⁵⁾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가구에서 전년도 월평균 소비지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대부분의 패널 조사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다 엄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가계부를 근거로 소비지출이 기록된 월별로 이루어진 가구 패널자료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가계부 기입을 원칙으로 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자료가 종합부동산세 환급금뿐 아니라 유가환급금 효과 추정을 위해서 더욱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되지만 패널자료가 아닌 점과 동 조사에서 두 환급금 수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중차분 추정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환급금 제도가 소비지출에 외생적으로 미친 영향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연간 패널 조사가 갖고 있는 한계점 및 본 연구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추정 결과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55) 대부분의 조사는 7월 이전에 완료되었고 그 이후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추가조사기간에 해당한다.

V. 정책시사점 및 결론

본 연구는 2008년에 단행되었던 유가환급금과 종합부동산세 환급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래 유가환급금은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종합부동산세 환급은 종합부동산세의 부부합산 과세의 위헌 판결 및 과도한 세부담의 경감 차원에서 단행되었다. 그런데 때마침 미국발 금융위기 및 그로 인해 촉발된 세계적 경제위기가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두 정책을 통하여 조세 환급정책이 경기침체에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얼마나 가지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다. 다시 말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분석은 두 정책이 애초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정책이 당시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우연하게 제공해 준 기회를 충실히 활용하여 향후 정책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찾기 위한 기초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분석은 앞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비 진작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조세 환급 정책이 얼마나 유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환급정책은 비슷한 시점에서 발생하였으면서도 주된 수혜계층과 환급효과의 지속성 측면에서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면서 차별적인 정책수단의 정책효과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더욱이 같은 기간에 차별적인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점은 시기별 차이에 의한 교란요인을 제거해줌으로써 분석편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계량분석을 통한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두 가지 환급정책 사이의 상대적인 정책 유효성·효과성에 대한 상호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지닌다. 이런 배경하에 두 가지 환급정책의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중차분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 환급의 경우에는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설명변수를 적절히 통제한 경우에는 경제적·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유가환급금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조를 이루었다.

환급금의 주된 수혜대상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고소득층이고 유가환급금의 경우에는 주로 중소득층과 저소득층이 해당된다. 한계소비성향 체감의 법칙은 재정패널자료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었다. 고소득층은 소비성향이 낮고 예산제약의 강도가 낮다. 따라서 환급에 따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유발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반면에 유가환급금의 경우에는 소비성향이 평균적으로 더 높고 예산제약의 강도가 높은 중·저소득층이 주된 수혜계층인 만큼 환급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소비지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 이는 경제이론에서 제시하는 바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도 경제이론을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다.

유가환급금은 일회성 환급인 반면 종합부동산세 환급은 항구적 감면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전자는 항상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지만 후자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소비지출이 주로 항상소득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경제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반대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소비지출의 변화가 항구적이 아닌 일시적 소비지출 변화의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그런 요소가 반영되어 상기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즉, 항구적 소비지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일시적 동기에 의한 우발적 소비지출의 변화는 야기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경제이론과 부합하는 설명이 가능하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만한 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잠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목적의 정책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개별(특별)소비세의 한시적 세율인하 또는 법인세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등 한시적 정책수단이 많이 사용되었다. 소위 바겐세일 효과를 노린 정책이다. 상기의 두 가지 환급정책이 가격에 영향을 주는 바겐세일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소득을 매개체로 사용한 만큼 바겐세일 효과를 도모하는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가처분소득의 변화를 정책도구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예산제약의 강도 또는 소비성향 등에 따라 효과성이 극명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가환급금 정책과 종합부동산세 환급정책의 정책목표가 동일하지 않으며,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소비 진작이나 특정 계층의 부담 경감을 정책목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 측면에서 정책 효과를 측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소득의 변화가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표면적인 정책목표와 달리 실제적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소비 진작이 요구된다면 상대적으로 예산제약의 강도가 높은 계층에 수혜가 집중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동일한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미시적 귀착의 차이로 인해 거시정책효과와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의 미시적 효과분석이 선행되어야만 거시경제적 성과도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득과 관련된 조세정책과 연계하여 소비 진작 효과를 논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조 또는 지원정책의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종합소득세의

경우 면세자 비율이 상당히 높고, 과세자 가운데에서도 상당수가 세부담의 절대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소득세를 경감해주더라도 소비 진작 효과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효과성 측면에서 비용 낭비적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근로장려세제 등과 같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집중된 수혜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근로장려세제 자체가 지닌 근로의욕 저해효과로 인해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비 진작 정책으로서의 유효성·효과성은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액 중 일부를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조세 환급의 하나이다. 반면에 유가환급금은, 명칭에서 세금의 환급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지만, 실상은 세금납부와는 관련 없이 소득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노동공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되었다. 이는 곧 유가환급금이 사실상 무상의 정부지원, 또는 정부이전소득 또는 재정지출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복지지출은 민간이전소득에 대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나타낸다. 성명재·박기백(2009)에서 보듯이 공적이전소득은 사적이전소득을 구축하는 효과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구축효과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유가환급금을 통한 소비 진작 효과는 구축효과를 차감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효과를 나타내므로 실제보다는 다소 효과가 과대포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성명재·박기백(2009)에서 보듯이 구축효과를 나타내는 회귀분석결과의 계수 추정치가 대체로 0.1 내외의 수준을 시현한다는 점을 놓고 보면 구축효과가 있더라도 경제적 의미에서는 그 정도가 크지 않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별도로 일본의 예에서 보았듯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도모함에 있어서는 구축효과에 유의하여야 한다. 성명재·박기백(2009)에서 보았듯이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구축효

과는 다행히 작게 나타났지만,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의 제공을 통한 소비 진작 효과가 상당히 작았다는 것은 소비쿠폰을 소비지출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상적인 소비행위를 거의 완전하게 또는 상당 부분 구축하였다면 정책비용에 비해 효과성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 순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본 연구에서 2008년에 시행되었던 유가환급금과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의 경제적 효과로서 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 즉 소비 진작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후자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통계적·경제적으로 유의미하게 소비지출을 증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후자의 주된 수혜대상이 소비성향이 낮고 예산제약의 강도가 낮은 고소득층에 집중된 반면, 전자는 소비성향이 높고 예산제약의 강도가 높아 가처분소득이 증가될 경우 소비지출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국세청, 「10월 1일부터 유가환급금 제도 시행」, 보도자료(2008. 10. 1)
- _____,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보도자료(2008. 11. 14)
- _____, 「유가환급금 지급결과 발표」, 보도자료(2008. 12. 29)
- _____, 「'08년 신규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안내」, 보도자료(2009. 5. 7)
- 기획재정부, 「유가환급금 대상확대 등 세법수정내용」, 보도자료(2008. 9. 9)
- 박형수, 「유가환급 정책에 대한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8.
-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경제위기』, 2009.
- 신용상, 「세금 환급의 경제적 효과」, 『금융포커스』, 제17권 33호, 2008.
- 성명재, 「우리나라 소득분배 구조 변천 및 관련 조세·재정정책 효과 분석」, 미발표자료, 2010.
- 성명재·김현숙,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소득·부동산 자산 결합분포 및 관련 세부담 분포분석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6-02, 한국조세연구원, 2006.
- 성명재·박기백,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 및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09-01,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신후식·유승선·연훈수, 「글로벌 금융위기 하의 주요국 정책대응과 시사점」, 국회 경제위기 대응팀 발간시리즈 제8호, 대한민국 국회, 2009.
- 안종석·박명호, 『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

- 한국조세연구원, 2009.
- 한국은행, 「미국 감세안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 『해외경제동향』, 2001.
-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 제2008-17호, 2008.
-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동향 09-5), 한국조세연구원, 2009.
-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패널사업팀, 「2차(2009)년도 재정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9.
- Agarwal S., C. Liu, and N. S. Souleles, “The Reaction of Consumer Spending and Debt to Tax Rebates: Evidence from Consumer Credit Data,”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15, No. 6, 2007, pp. 986~1019.
- Blundell, R., and M. C. Dias, “Alternative Approaches to Evaluation in Empirical Microeconomics,” CETE Discussion Paper 2008-05, 2008.
- Blundell, Richard, & Thomas MaCurdy. “Labor Supply: A Review of Alternative Approaches,” In Orley Ashenfelter and David Car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3A, 1999, pp. 1559~1695.
- Broda, C. & Parker, J.A. “The Impact of the 2008 Rebate,” Chicagobooth.edu, 15 August 2008. [web document available at chicagobooth.edu]
- Hori, M. & Shimizutani, S., “Micro Data Studies on Japanese Tax Policy and Consumption in the 1990s,” ESRI Discussion Paper Series No. 14, Economic and Social Institute, Cabinet Office, Tokyo, Japan, 2002.
- Hori, M. et al., “Did the Shopping Coupon Program Stimulate

- Consumption? Evidence from Japanese Micro Data,” ESRI Discussion Paper Series No.12, Economic and Social Institute, Cabinet Office, Tokyo, Japan, 2002.
- Knutter, K. & Posen, A., “The Great Recession: Lessons for Macroeconomic Policy from Japa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001, No. 2, pp. 93~160.
- Johnson D. S., J. A. Parker, and N. S. Souleles, “Household Expenditure and the Income Tax Rebates of 2001,”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6, No. 5, 2006, pp. 1589~1610.
- Meyer B. D., “Natural and Quasi-Experiments in Economics,”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Vol. 13, No. 2, 1995, pp. 151~161.
- Rosenzweig, M. R. and K. I. Wolpin, “Natural Experiments in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8, No. 4, 2000, pp. 827~874.
- Shapiro, M. & Slemrod, J., “Consumer Response to Tax Rebat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3, No. 1, 2003, pp. 381~396.
- Shapiro, Matthew D. and Joel B. Slemrod, “Did the 2008 tax rebates stimulate spending?” NBER Working Paper #14753, 2009.
- Watanabe, Katsunori, Takayuki Watanabe, and Tsutomu Watanabe, “Tax policy and consumer spending: evidence from Japanese fiscal experim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53, 2001, pp. 261~281.
- Wooldridge, J. M.,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MIT Press, 2002.

부록 I : 내구재 소비 관련 모형

유가환급금의 경우 평균적으로 환급금 액수보다 그로 인해 과급된 소비증가액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제이론, 즉 '한계소비성향 체감의 법칙'에 위배된다. 그러나 이 법칙은 집합변수(aggregate variables)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일반론일 뿐, 개별 소비자의 개별 소비행위 시에 특정한 소득구간에서 부분적으로 그에 배치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이론적 모형 설정을 통해 설명해보자.

먼저 논의의 편의상 소비재는 2개가 존재하며, 하나는 비내구재(財1)이고 다른 하나는 내구소비재(財2)라고 하자. 각각에 대한 소비지출을 C_1 과 C_2 라고 하자. 소비자들은 예산제약하에서 두 가지 소비재에 대한 소비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하자. 논의의 편의상 효용함수는 아래와 같이 분리가능합산조건(additively separable)을 만족시킨다고 하자.

$$U = U(C_1, C_2) = U_1(C_1) + U_2(C_2) \quad \text{단, } U_j = U_j(C_j), \quad j=1, 2.$$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조건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max_{C_1, C_2} U = U(C_1, C_2) = U_1(C_1) + U_2(C_2) \quad \text{s.t. } C_1 + C_2 \leq Y$$

이 때 두 소비재에 대한 소비지출($C_j, j=1, 2$)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고 하자.

$$C_1 = \max[C_1^*, 0]$$

$$C_2 = \max[C_2^*, \bar{C}]$$

여기서 \bar{C} 는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bar{C} > 0$). 이 때 C_j^* ($j=1, 2$)는 각 소비재에 대한 (금전으로 환산한) 소비자의 소비욕망(desire to consume) 또는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를 나타낸다. 각각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는 다음의 함수 꼴로 표현된다고 하자.

$$C_1^* = a_1 + b_1Y + \gamma_1Z_1 + g_1(P) + \epsilon_1$$

$$C_2^* = a_2 + b_2Y + \gamma_2Z_2 + g_2(P) + \epsilon_2$$

이 때 Y 는 (가처분)소득, $P = (P_1, P_2)$ 는 두 소비재의 가격을 나타내는 벡터이다. 두 소비재 $j=1, 2$ 에 대해, Z_j 는 기타의 설명변수, a_j , b_j , γ_j 는 계수(coefficients), ϵ_j 는 오차항, $g_j(\cdot)$ 는 가격벡터가 각 소비재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함수를 나타낸다.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식을 한데 결합하여 각 소비재의 소비지출 함수를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C_1 = \max[C_1^*, 0] = \max[a_1 + b_1Y + \gamma_1Z_1 + g_1(P) + \epsilon_1, 0]$$

$$C_2 = \max[C_2^*, \bar{C}] = \max[a_2 + b_2Y + \gamma_2Z_2 + g_2(P) + \epsilon_2, \bar{C}]$$

상기 식 중 비내구소비재(財1)의 경우에는 지불의사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 그 값으로 해당 소비재에 대한 소비지출이 실현됨을 의미한다.

앞서 보았듯이 \bar{C} 는 양(+)의 값을 가진 상수이다. 따라서 내구소비재(財2)의 경우에는 지불의사가 일정한 상수(여기서는 \bar{C})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에만 소비지출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고가의) 가진

제품, 자동차, 주택 등과 같은 내구소비재 또는 내구재의 경우에는 가격대가 가장 낮은 경우에도 단위당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를테면 $\bar{C} > 0$)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0과 \bar{C} 사이의 값을 나타내는 소비지출은 존재하지 않는다⁵⁶⁾.

이 때 조세 환급을 통해 소득이 ΔY 만큼 증가하였고 소득증가폭은 \bar{C} 보다 작다고 하자: $\Delta Y \leq \bar{C}$. 소득증가에 따른 내구소비재에 대한 지불의사(C_2^*)의 변화를 ΔC_2^* 라고 하고, 증가된 소득에 대응한 지불의사를 $C_2^o = C_2^* + \Delta C_2^*$ 라고 하자. 지불의사를 나타내는 식으로부터 $\Delta C_2^* = b_2 \Delta Y$ 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조세 환급이 발생하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불의사 C_2^* 는 다음과 같이 \bar{C} 보다 조금 작은 값을 가진다고 하자: $C_2^* \leq \bar{C}$, $|\bar{C} - C_2^*| \leq b_2 \Delta Y$. 그러면 $C_2^o \geq \bar{C}$ 이 되어 다음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Delta C_2 = C_2^o - 0 = C_2^* + \Delta C_2^* = C_2^* + b_2 \Delta Y \geq \bar{C}.$$

즉, 조세 환급에 따른 내구재에 대한 지출의사 C_2^o 는 내구소비재에 대한 소비지출을 실현시켜주는 최소의 값 \bar{C} 보다 크게 되어 내구소비재에 대한 소비지출이 C_2^o 로 실현된다. 이 경우 $\Delta C_2 \geq \bar{C} \geq \Delta Y$ 의 관계가 성립한다. 즉, 내구소비재에 대한 소비지출은 소득증가분보다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조세 환급이 이루어질 경우 위에서 논의한 조건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서 아래의 조건이 성립하면서 소비지출의 변화폭은 소득증가폭보다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커지게 된다($MPC \geq 1$).

$$\Delta C = \Delta C_1 + \Delta C_2 \geq \Delta C_1 + \bar{C} \geq \Delta Y$$

56) 할부구매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지출액이 \bar{C} 보다 작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내구재 구입을 위한 결제 편의상 현금주의에 입각한 지출액을 나타낼 뿐이며 내구재 총구입비용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여기서 내구소비재에 대한 지불의사 결정식에서 한계지출의사를 나타내는 b_2 가 1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실제 소비지출을 나타내는 한계소비성향은 1보다 크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 환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지출의 변화폭이 소득증가폭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내구소비재에 대한 지불의사가 내구소비재의 가격보다 조금 작은 상태에서 조세 환급 등으로 인해 추가되는 지불의사 증가를 통해 증가된 지불의사 총액이 내구소비재 가격 또는 \bar{C} 보다 커지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나타난다. 만약 조세 환급을 받는 환급대상자 가운데 이런 경우에 놓인 소비자가 다수를 이룬다면 전체적으로 조세 환급규모보다 소비지출 증가규모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반대로 내구소비재에 대한 지불의사가 \bar{C} 보다 조금 작은 소비자의 비중이 낮다면 그런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실제로 소비자 선호구조와 소득수준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의존하는바, 이런 사실의 존재 여부는 사전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사례는 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는 경우에도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소비세 인하에 의한 구입비용 감소분보다 소비지출 증가분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라 구입최저한 비용 \bar{C} 가 인하되면서 지불의사보다 작아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인하폭이 크면서 경감조치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내구소비재에 대한 경우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서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효과보다 소비지출 증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로서 지불의사가 최저구입비용보다 조금 작은 소비자들이 많이 존재할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일종의 '바겐세일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역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의 현재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에서 위의 경우와 유사성을 지닌다. 다만 바겐세일 효과를 감안하기 위해서는, 내구소비재 등에 대한 현재 시점의 (대체)구입의사가 최저 구입 비용보다 여전히 낮아 현재 기간만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구입하지 않을 것이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구입비용이 미래시점에서의 구입 비용보다 현저하게 낮아지고 소비행위가 미래기간에도 연장됨으로써 높아진 효용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효용 또는 지불의사의 현재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지불의사의 현재가치가 최저구입 비용을 초과하게 됨에 따른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런 내용의 분석을 위해서는 지불의사를 나타내는 지불의사 함수 내에 미래기간에 대한 효용 등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지불의사 함수의 수정이 필요하다. 다만 이 문제는 본 연구의 연구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추가적인 논의는 하지 않는다.

부록 II : 가계조사자료의 소득 분포

〈부표 1〉 소득계층별 소득·세부담 분포 (2009년 가계조사자료 기준)

(단위: 천원, %)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시장소득	5,767	12,586	17,788	23,730	29,643	35,004	41,464	48,894	59,033	88,026	36,191
민간이전소득	1,453	1,871	2,164	1,680	1,361	1,534	1,799	1,610	2,108	2,126	1,771
공적연금	971	942	990	1,115	1,106	1,346	970	1,303	994	1,181	1,092
기타사회보장수혜	770	591	656	592	642	528	507	537	432	367	562
공적이전소득	1,740	1,533	1,646	1,707	1,749	1,874	1,476	1,841	1,426	1,548	1,654
총이전소득	3,194	3,404	3,810	3,387	3,109	3,408	3,275	3,451	3,533	3,674	3,424
총소득	8,961	15,990	21,597	27,117	32,752	38,412	44,739	52,345	62,567	91,700	39,616
소득세	14	82	174	285	516	703	1,135	1,749	2,561	5,822	1,304
재산세	41	83	79	111	130	136	138	184	209	396	151
직접조세	55	165	253	396	647	839	1,273	1,933	2,771	6,219	1,455
공적연금기여금	47	151	259	478	621	861	1,094	1,363	1,639	2,284	880
건강보험료	149	261	364	553	647	756	915	1,099	1,319	1,867	793
기타사회보험료	4	10	19	38	51	58	72	86	115	146	60
사회보장기여금계	200	422	642	1,070	1,319	1,674	2,082	2,548	3,073	4,297	1,732
총직접세	255	587	895	1,466	1,966	2,513	3,355	4,480	5,844	10,515	3,187
가처분소득	8,706	15,403	20,703	25,651	30,786	35,899	41,384	47,865	56,723	81,185	36,428
점유비중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계
시장소득	1.60	3.47	4.92	6.55	8.21	9.64	11.46	13.50	16.32	24.33	100
민간이전소득	8.22	10.55	12.24	9.48	7.71	8.63	10.16	9.09	11.91	12.01	100
공적연금	8.91	8.61	9.08	10.21	10.16	12.29	8.88	11.92	9.11	10.83	100
기타사회보장수혜	13.7	10.50	11.68	10.52	11.46	9.37	9.01	9.55	7.68	6.53	100
공적이전소득	10.54	9.25	9.97	10.31	10.60	11.29	8.93	11.12	8.62	9.36	100
총이전소득	9.34	9.92	11.14	9.88	9.11	9.92	9.57	10.07	10.32	10.73	100

〈부표 1〉의 계속

(단위: 천원, %)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총소득	2.26	4.03	5.46	6.84	8.29	9.66	11.30	13.20	15.80	23.15	100
소득세	0.11	0.63	1.33	2.19	3.97	5.37	8.71	13.40	19.65	44.65	100
재산세	2.71	5.50	5.24	7.34	8.66	9.00	9.14	12.18	13.91	26.30	100
직접조세	0.38	1.13	1.74	2.72	4.46	5.75	8.75	13.27	19.05	42.75	100
공적연금기여금	0.54	1.71	2.95	5.43	7.08	9.75	12.44	15.48	18.65	25.97	100
건강보험료	1.88	3.28	4.60	6.98	8.18	9.50	11.54	13.85	16.64	23.55	100
기타사회보험료	0.60	1.75	3.20	6.40	8.56	9.59	12.08	14.25	19.25	24.31	100
사회보장기여금계	1.16	2.43	3.71	6.17	7.64	9.63	12.02	14.69	17.75	24.81	100
총직접세	0.80	1.84	2.81	4.60	6.18	7.86	10.53	14.04	18.34	33.00	100
가처분소득	2.39	4.22	5.69	7.04	8.48	9.82	11.36	13.13	15.58	22.29	100
총소득 대비 비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시장소득	64.36	78.71	82.36	87.51	90.51	91.13	92.68	93.41	94.35	95.99	91.36
민간이전소득	16.22	11.7	10.02	6.19	4.15	3.99	4.02	3.08	3.37	2.32	4.47
공적연금	10.83	5.89	4.58	4.11	3.38	3.5	2.17	2.49	1.59	1.29	2.76
기타사회보장수혜	8.59	3.70	3.04	2.18	1.96	1.38	1.13	1.03	0.69	0.40	1.42
공적이전소득	19.42	9.59	7.62	6.29	5.34	4.88	3.3	3.52	2.28	1.69	4.17
총이전소득	35.64	21.29	17.64	12.49	9.49	8.87	7.32	6.59	5.65	4.01	8.64
총소득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소득세	0.15	0.51	0.80	1.05	1.58	1.83	2.54	3.34	4.09	6.35	3.29
재산세	0.46	0.52	0.37	0.41	0.40	0.35	0.31	0.35	0.33	0.43	0.38
직접조세	0.61	1.03	1.17	1.46	1.97	2.18	2.85	3.69	4.43	6.78	3.67
공적연금기여금	0.53	0.94	1.20	1.76	1.90	2.24	2.45	2.6	2.62	2.49	2.22
건강보험료	1.67	1.63	1.69	2.04	1.98	1.97	2.05	2.10	2.11	2.04	2.00
기타사회보험료	0.04	0.07	0.09	0.14	0.16	0.15	0.16	0.16	0.18	0.16	0.15
사회보장기여금계	2.23	2.64	2.97	3.94	4.03	4.36	4.65	4.87	4.91	4.69	4.37
총직접세	2.84	3.67	4.14	5.41	6.00	6.54	7.50	8.56	9.34	11.47	8.05
가처분소득	97.16	96.33	95.86	94.59	94.00	93.46	92.5	91.44	90.66	88.53	91.95

<국문요약>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및 정책시사점

송현재 · 성명재 · 고 선

이 연구는 2008년에 단행되었던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은 일본의 상품권 지급 정책이나 미국의 2008년 조세 환급 정책처럼 직접적으로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한 정책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기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제위기 상황에서 조세 환급 정책이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연구 기회를 제공해준다.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 진작 효과를 이중차분방법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종합부동산세 환급의 경우에는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설명변수를 적절히 통제한 경우에는 경제적·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가환급금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 진작 정책의 실효성은 상대적으로 예산제약이 강한 계층에 집중될 경우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Gas Price Tax Rebate” an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ebate” o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s, with policy implications

Heonjae Song · Myung Jae Sung · Sun Go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Gas Price Tax Rebate” an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ebate” o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s in the economic crisis. Different from the Japanese shopping coupon program and the U.S. 2008 tax rebates, the two rebate policies in Korea did not directly aim at stimulating consumption. However, the contemporaneous economic downturn allows us to study the effects of the tax rebates on consumption expenditures in the economic crisis. The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ors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KIPF fiscal) panel data show that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ebate had little effect on stimulating consumption. In contrast, the DID estimation results support that the Gas Price Tax Rebate had sizable positive effect on consumption expenditures. This implies that tax rebates to stimulate consumption in the recession would be more effective when targeted at those who have tighter income constraints.

〈著者略歷〉

송헌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성명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석·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 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자료 수집 및 정리

류인경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원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이준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研究報告書 10-06

유가환급금 및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및 정책시사점

2010년 12월 23일 인쇄

2010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송헌재·성명재·고 선

발행인 원윤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1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상 일 인 쇄

인 쇄 © 한국조세연구원 2010

ISBN 978-89-8191-492-9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5,000원

